

트럼프 취임 한 달,

# 통상규제 대응전략



삼일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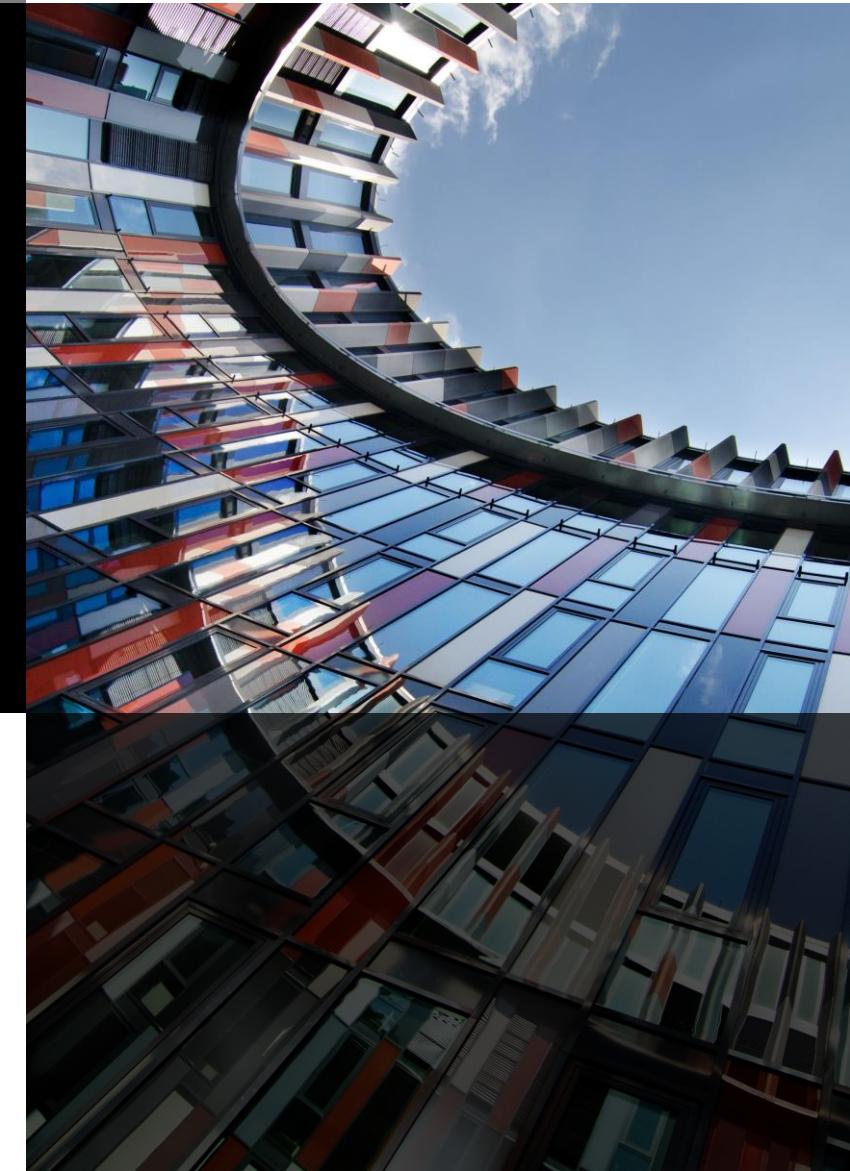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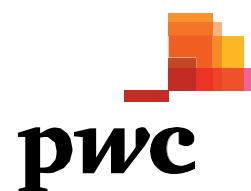
**Session 1.** 트럼프 취임 한 달, 통상규제 대응전략

# US Trade Policy Updates

취임한 달, 통상규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및 다국적 기업들의 동향

**Anthony Tennariello**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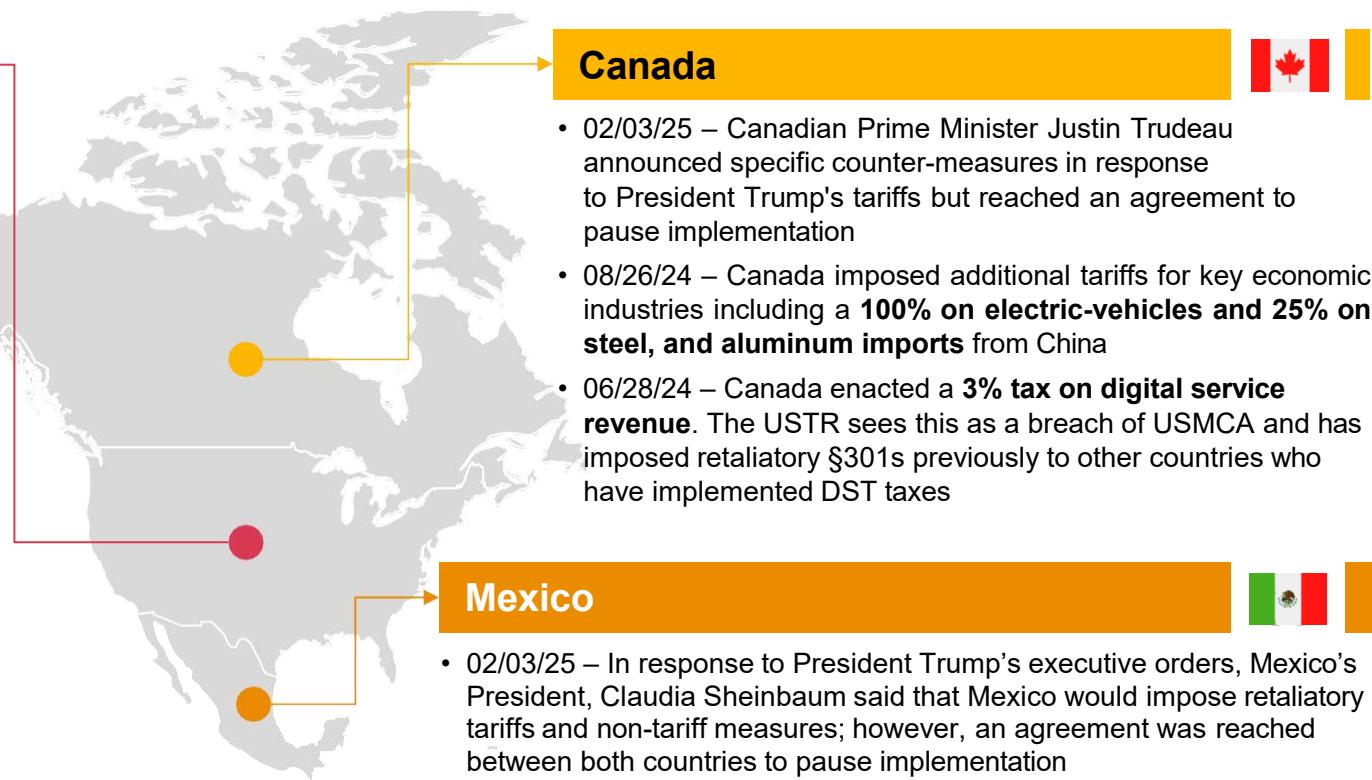
PwC US 통상관세 Principal



# North America – Trade Policies

## United States

- **Trump Tariffs** – Recent executive orders have impacted tariffs, with some temporarily postponed. Below is the current tariff landscape:
  - **China-origin goods:** **10% tariff**, in addition to existing rates (which can be up to 50%). **De minimis** will be eliminated when systems required become operational.
  - **Mexico-origin goods:** **25% tariff** postponed until **March 4**
  - **Canadian-origin goods:** **25% tariff** postponed until **March 4**
  - **Steel & Aluminum:** **25% tariff** on covered imports from all countries effective **March 12**
- **America First Trade Policy**
  - **Investigation of Unfair and Unbalanced Trade**  
**deficit (2a)** – focus on countries with annual trade deficits in goods (e.g., Mexico, Ireland, Vietnam and Switzerland) could be targets for these tariffs. Conversely, countries with a trade surplus (e.g., Cyprus, Malta,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may not face these targeted tariffs
  - **Formation of External Revenue Service (ERS) (2b)** – to collect tariffs and duties
  - **Investig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2c)** – could involve a myriad of options of executive orders / executive actions on tariffs
  - **Consultation / Review of USMCA (2d)** – in part the potential Feb 1 tariffs to move this up to negotiate USMCA prior to the July 2026 review
  - **PNTR with China (3d)** – request for proposed changes to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PRC
  - Investigations to be concluded by **April 1**
  - **Reciprocal Trade and Tariff Order (Feb. 13, 2025)**  
    **Fair and Reciprocal Plan (Sec. 2)** investigation on non-reciprocal trade relationships with the US (to include VAT)  
    **Taking Action (Sec. 3)** – within 180 days of order (**August 12, 2025**)



## Canada

- 02/03/25 –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nnounced specific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o President Trump's tariffs but reached an agreement to pause implementation
- 08/26/24 – Canada imposed additional tariffs for key economic industries including a **100% on electric-vehicles and 25%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 06/28/24 – Canada enacted a **3% tax on digital service revenue**. The USTR sees this as a breach of USMCA and has imposed retaliatory §301s previously to other countries who have implemented DST taxes



## Mexico

- 02/03/25 – In response to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s, Mexico's President, Claudia Sheinbaum said that Mexico would impose retaliatory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s; however, an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both countries to pause implementation
- 12/19/24 – Mexico imposed 35% tariff on 138 HTS codes related to apparel products and 15% tariff on other textile products. Additionally, 302 HTS codes of goods for the textile industry are prohibited to be temporarily imported under the IMMEX Program
- 7/10/24 – The US applied its own 25% and 10% import tariff on steel and aluminum from Mexico if not melted in US/MX/CAN
- 05/21/24 – Temporary importations of 'sensitive goods' are **no longer eligible** to apply for the **Rule 8 exemption**
- 04/22/24 – Imposed **5%-50%** tariff on specific goods such as **steel, aluminum, textiles**, etc.



# Legal Pathways to Impose Tariffs

Although Article I, Section 8 of the US Constitution grants Congress th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powers, and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here are several alternative avenues under which this Congressional authority is delegated to the Executive branch and therefore doesn't necessitate Congressional approval or gives the Executive branch significant discretionary authority.

	<b>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b>	<b>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b>	<b>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b>	<b>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b>	<b>Section 338 of the Trade Act of 1930</b>	<b>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b>
 What does it do?	Empowers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o revoke trade agreement benefits or implement import restrictions if it concludes that a trading partner is breaching trade agreement obligations or engaging in discriminatory or unjust practices that <b>hinder or constrain US commerce</b> .	Allows the President to adjust imports if the Department of Commerce determines that certain products are being imported in quantities or under circumstances that <b>threaten or impair national security</b> .	Permits the President to implement temporary duties or trade measures i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determines that a surge in imports is causing or threatening to cause <b>injury to US industry</b> .	Grants the President authority to regulate economic transactions in response to national emergencies that <b>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or economy</b>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the President the authority to take retaliatory actions against foreign countries that impose unreasonable or <b>discriminatory duties, tariffs, or other trade restrictions on US goods</b> .	Authorizes the President to address <b>substantial balance-of-payments shortfalls</b> or major and severe disturbances in the U.S. economy by modifying import levels through temporary tariffs or quotas.
 Potential measures under thi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riffs or import restrictions on goods from the offending country.</li> <li>Suspension of trade agreement benefits.</li> <li>Alternative measures availabl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riffs or import restrictions on certain goods</li> <li>Imposition of import quota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ariffs or import restrictions on certain goods</li> <li>Imposition of import quotas</li> <li>Alternative measures availabl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istorically this act is not the primary legal basis for imposing tariffs or trade restrictions, but current legal scholars believe there is potential for this power to permit certain trade restric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crease duties up to 50% on offending countries' products</li> <li>Impose Additional Restrictions</li> <li>Target Specific goods in retaliatory measures (e.g. ba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mport surcharges up to 15%</li> <li>Import quotas</li> <li>*Applies to all countries for up to 150 days</li> </ul>
 How is it poss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TR investigation</li> <li>Affirmative finding results in mandatory action (30 days after dispute settlement concludes) or discretionary action</li> <li>Congress receives semiannual repor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partment of Commerce investigation (270 days to draft report to president)</li> <li>Affirmative findings result in 90 days of Presidential decision and 15 days for implement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C investigation (120 days)</li> <li>Remedy/findings to president (180 days)</li> <li>President determination, recommendation and implementation (60 day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ational emergency declared</li> <li>President is required to report to Congress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to track costs</li> <li>Required annual review to assess extens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C investig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esidential authority to act unilaterally, but address Congress after initial 150 days</li> <li>Can be extended past 150 days by Congress</li> </ul>

# PwC's Tariff Industry Analysis (1/2)

## Top 20 Trade Deficit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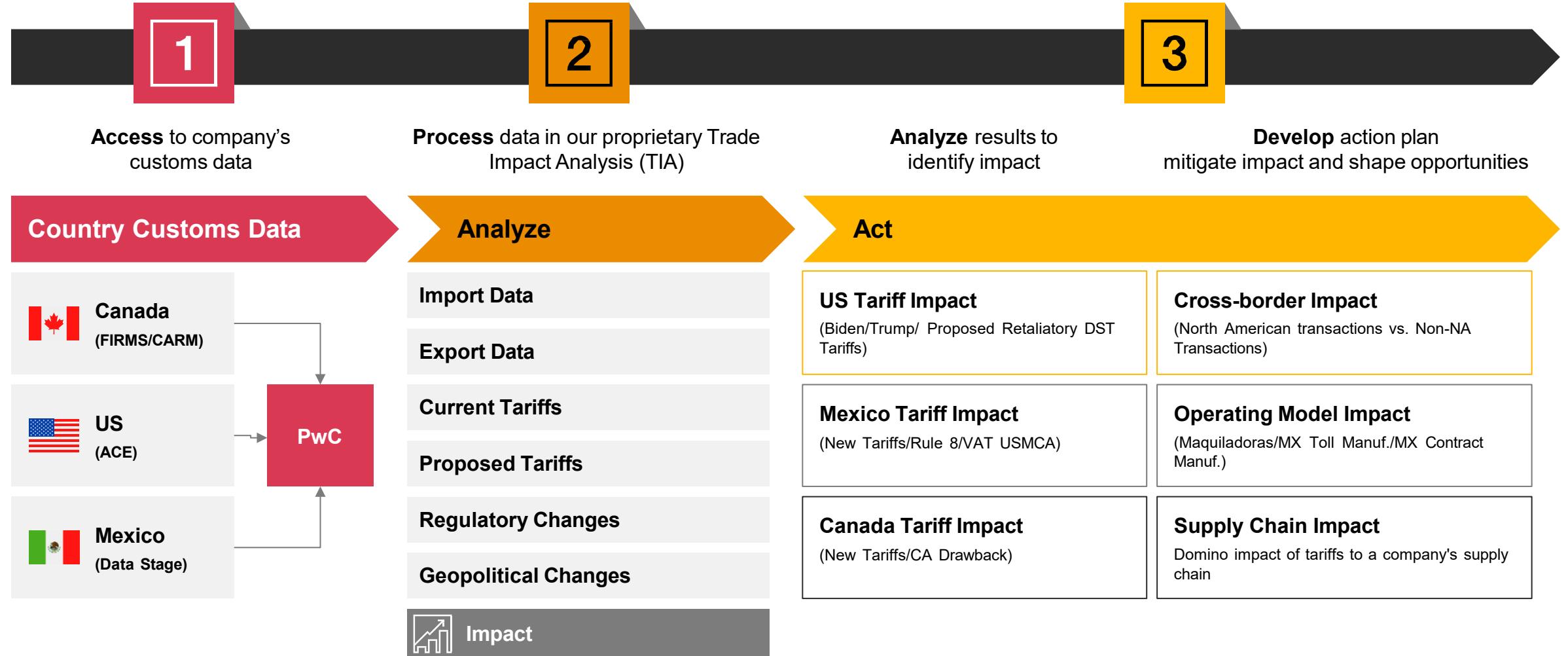
US Annual Imports

(October 2023 through October 2024)

**Catalyst:** Investigation of Unbalanced  
Trade deficit (2a) of **America First**  
**Trade Policy** with April 1 completion

Country	Total Export Value	Total Import Value	Annual Trade Balance
China	\$159,987,457,891.	\$453,880,652,361.	(\$293,893,194,470.)
Mexico	\$361,970,630,365.	\$528,839,964,674.	(\$166,869,334,309.)
Vietnam	\$13,129,217,750.	\$145,645,931,422.	(\$132,516,713,672.)
Germany	\$82,593,807,732.	\$163,774,067,489.	(\$81,180,259,757.)
Ireland	\$18,181,945,829.	\$94,768,433,428.	(\$76,586,487,599.)
Japan	\$85,577,927,689.	\$158,290,771,238.	(\$72,712,843,549.)
Taiwan	\$45,291,903,984.	\$116,269,071,315.	(\$70,977,167,331.)
South Korea	\$72,797,793,490.	\$137,101,789,244.	(\$64,303,995,754.)
India	\$44,641,185,240.	\$93,266,881,026.	(\$48,625,695,786.)
Thailand	\$18,571,898,412.	\$65,929,887,343.	(\$47,357,988,931.)
Canada	\$379,287,921,884.	\$426,306,739,715.	(\$47,018,817,831.)
Italy	\$34,262,133,203.	\$77,844,482,320.	(\$43,582,349,117.)
Malaysia	\$29,230,625,511.	\$51,622,775,578.	(\$22,392,150,067.)
Switzerland	\$29,058,732,097.	\$51,009,691,705.	(\$21,950,959,608.)
Indonesia	\$10,818,506,452.	\$29,184,925,758.	(\$18,366,419,306.)
Cambodia	\$347,679,779.	\$13,575,474,314.	(\$13,227,794,535.)
Austria	\$5,117,901,334.	\$18,317,869,812.	(\$13,199,968,478.)
France	\$47,973,045,914.	\$59,862,890,364.	(\$11,889,844,450.)
Sweden	\$8,867,734,611.	\$18,886,813,392.	(\$10,019,078,781.)
Hungary	\$3,564,161,323.	\$12,574,513,464.	(\$9,010,352,141.)

# PwC's Approach to Assess Tariff Impact & Opportunities



# Our understanding of your challenge and support need



## Areas for Ide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our modeling, as well as knowledge about your supply chain, we are able to perform a deeper dive into the data and examine the following areas to identify potential alternatives to mitigate tariff impact:



### Customs:

- Valuation: Alternative valuation, changes in the valuation methodology, FSFE, FTZ, Ch98
- Origin: Country of Origin analysis, Free Trade Agreements
- Classification: Tariff engineering
- Duty Drawback



### Tax and Transfer Pricing:

- Price unbundling
- Adjustments to intercompany pricing
- Alternate remuneration model
-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 Profitability analysis
- Review of tax attributes



### Supply Chain Operations:

- Alternate Sourcing
- Supplier Negotiations
- Origin Engineering



### Commercial Arrangements:

- Customer and Supplier Pricing and Negot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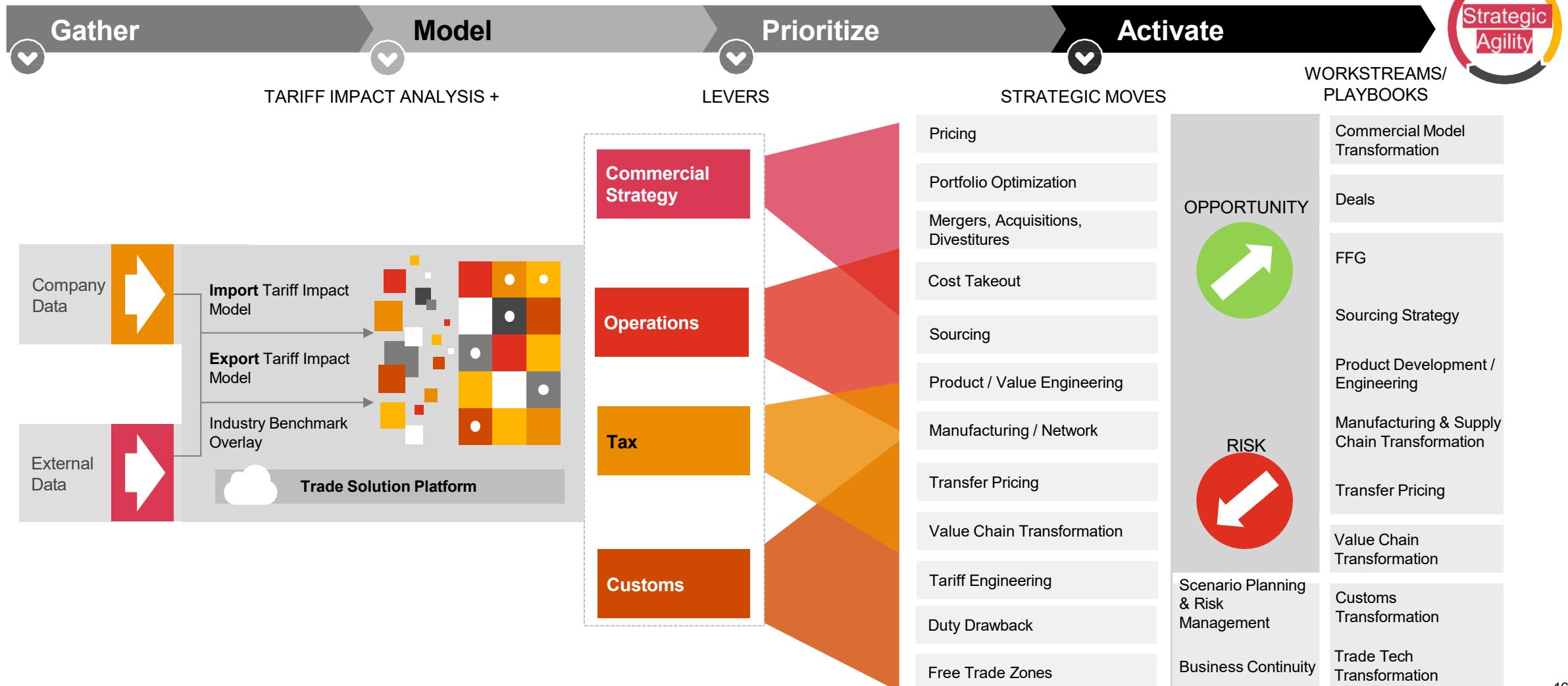


### Policy:

- Advocacy/Lobbying
- Tariff Exclusions

# Strategy built on data-driven, actionable insights

Our approach is **agile** and integrates **data-driven** forecasting and simulation modeling to provide **actionable insights** for risk mitigation and opportunity identification to **guide client transformation**



# Thank you



#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무역안보 정책 전망

2025.2.27.(목)

채수홍 정책협력실장

# 목 차

## 1 서론

-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 미 트럼프 2.0 행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전망

## 2

### 2025년 무역안보 Outlook: 관찰과 전망,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 통제 분야의 확대
- 통제 메커니즘의 강화
- 통제 메커니즘의 연계
- 경제 블록화의 심화와 수출통제의 충돌

## 3

### 결론



## ①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 ○ (미국) 첨단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강화 / 신흥기술 분야 다자간 수출통제 추진

\*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의 외국고객 정보 의무 보고 규정(안)(1월), ▲對중국 HBM 및 반도체 장비 24종, SW 3종 수출통제(12월)

\*\* 다자 협력: ▲호주·영국 대상 군수품관련 허가 축소(4월) ▲ 신흥기술 관련 품목 수출통제 및 동일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파트너국에게 수출허가 면제(9월) ▲ 호주·영국·캐나다 대상 우주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요건 완화

### ○ (중국) 기존 수출통제법('20.12)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며 「희토류 관리 조례」 공포,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공포,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 대상 對美 수출금지

\* 항공우주: ▲항공우주 품목 수출시 상무부 허가. 다자 및 독자통제 품목 추가(5월) ▲ 무인항공기 통제기준을 사양 → 용도로 변경 (7월)

\*\* 「희토류 관리 조례」: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의 수출을 관리(10월 시행)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중국산 품목(기술 포함)을 활용한 외산품목에 대해 중국 수출통제 준수 요구 가능 근거 마련



# 1. 서론

## ② 미 트럼프 2.0 행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전망

### 트럼프 2.0 행정부 무역안보 전략 및 향후 전망

구분	전략	전망
對중국 전략	<p><b>디커플링(Decoupling)</b></p> <p>중국은 미국의 최대 적으로서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 및 '기술 토착화' 저지</p>	<p><b>1) 통제 분야의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용 사양의 품목까지 확대</li> <li>▪ 신흥기술(AI,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등) 통제 확대</li> <li>▪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확대</li> </ul>
통제 타겟	<p><b>(단기) Entity 확대 → (장기) 첨단 기술/산업</b></p> <p>통제 우회 차단 및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관련 기업 통제 강화</p>	<p><b>2) 통제 메커니즘의 강화 및 연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수출통제 범위 확대, 국가군 설정 변경, 처벌기준의 강화</li> <li>▪ 통제 수단 간·부처별 리스트 간 연계</li> </ul>
수출통제 공조	<p><b>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반한 협력</b></p> <p>신속한 독자 통제 → 동맹국에게 의무와 혜택 부여</p>	<p><b>3) 경제블록화의 심화와 수출통제의 충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국 타겟팅</li> <li>▪ 수출통제 역외적용</li> <li>▪ 수출통제 법령의 충돌</li> </ul>



## 2. 2025년 무역안보 주요 전망

### ① 통제분야 확대

#### ○ 반도체 분야 범용 사양까지로 기술 통제

- '24.1 美 상무부 조사결과에서 향후 3~5년간 레거시 반도체(28nm 노드 이상) 제조 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중국이 충분한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에 군사목적 활용 방지차원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

AI 칩 관련 통제 현황 (예시)

칩 기준	통제 시기
엔비디아 A100, H100	'22.10.7 통제
엔비디아 A800, H800	'23.10.17 통제
HBM	'24.12.2 통제
H20	미 의회, 통제 촉구 중

범용 반도체 통제 시나리오

통제범위 확대 시나리오(Logic chip)	영향받는 품목
~28nm 통제할 경우	자율차, 서버
~65nm 통제할 경우	스마트폰, SSD
~130nm 통제할 경우	PC, HDD



## 2. 2025년 무역안보 주요 전망

### ① 통제분야 확대

#### ○ 신흥기술 통제 확대

– 미국은 ‘24년 이후로 AI,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들을 발표했음. 중국이 기술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제가 강화될 전망

#### 향후 미국이 통제 가능한 신흥기술 산업 분야별 시나리오

분야	현재의 통제	기능한 통제
인공 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Chip 수출제한</li> <li>AI 모델 수출제한</li> <li>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고객 대상 최종사용자 통제</li> <li>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수출통제</li> </ul>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바이오기업, 美 상무부 Entity List 등재</li> <li>대량민감정보 접근시, 외국인투자심사 의무화</li> <li>생명공학 장비, 수출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바이오 기업 대상 거래금지 부과</li> <li>상기 조치 + 2차 제재 부과</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배터리기업, 美 국방부 목록 등재 (국방부 조달 참여 금지)</li> <li>中 배터리,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배터리기업, 美 상무부 목록 등재</li> <li>中 배터리기업, 美 재무부 목록 등재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li> </ul>
항공 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드론업체, 미 상무부 EIU 등재</li> <li>中 드론업체, 미 국방부 리스트 등재</li> <li>中 드론업체, 미 재무부 투자금지 리스트 등재</li> <li>드론 관련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거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中 드론의 미국 내 거래 전면 차단</li> </ul>



## 2. 2025년 무역안보 주요 전망

### ① 통제분야 확대

#### ○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확대

– 중국은 그간 핵심 광물 관련 수출통제 조치들을 도입해온 경향으로 보아 향후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경우, 중국은 중국에 의존도가 큰 광물들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존재.

〈 미 아시아정책연구소의 향후 예상되는 광물 통제 가능성 ('25.1.10) 〉

종류	중국 독점 지위	중국의 해외시장 의존도	미국의 우선순위	초크포인트	점수
흑연	5	-1	8	5.0	17.0
망간	3	0	9	5.0	17.0
희토류	5	-1	8	5.0	17.0
코발트	3	0	9	3.0	15.0
게르마늄	3	-1	11	1.0	14.0
니켈	0	0	9	5.0	14.0
텅스텐	5	0	6	3.0	14.0
안티몬	3	-1	7	3.0	12.0
마그네슘	5	-3	6	3.4	11.4
리튬	5	-5	11	0.0	11.0
คว츠	0	-1	6	5.0	10.0
크롬	0	0	7	3.0	10.0
구리	3	0	6	1.0	10.0
갈륨	3	-1	6	1.0	9.0
탄탈륨	5	-3	6	1.0	9.0
티타늄	3	-3	6	2.0	8.0



## 2. 2025년 무역안보 주요 전망

### ② 통제메커니즘의 강화

#### ○ Entity List 운영방식 조정을 통한 재수출통제 확대

– (Entity List에 SDN 50% 를 적용) 등재자들이 50%이상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기업들에도 통제 적용 (우회 차단)

\* SDN 등재자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등재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SDN으로 간주

– (de minimis 강화 : 25% → 10% or 0% / 또는 “See through” Rule 적용) 중국에 0% 적용시 수출통제 강화. 또한, 국무부 소관 규칙의 See through rule을 상무부에서도 적용하면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

\* de minimis: EAR 적용 대상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일정 비율 초과하면 미국의 재수출통제를 적용한다. 통제기준 비율은 대상 목적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 대부분 25% 적용하고 특정 품목, 목적지에는 0% 적용함.

\* See through Rule: 국무부의 ITAR규정에서 적용하는 see through rule은 ITAR 통제 품목 리스트가 상업용 최종 물품에 통합되는 경우 일반 상업용 최종 물품도 통제 대상이 되도록 함.



## 2. 2025년 무역안보 주요 전망

### ③ 통제메커니즘의 연계

- 미국은 2018년 ECRA와 FIRRMA를 제정하면서 민감기술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수출통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가 모두 사용되도록 연계시켰음.
- 우려국 대상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여러 통제 메커니즘이 종동원
  - ▲기술 사양 중심의 통제 연계 ▲우려거래자 목록의 상호 연계를 통해 수출통제 강화 등

(우려거래자 목록간 연계) Entity List와 다른 목록이 연계될 경우의 효과 및 가능성

수출통제	타 우려거래자 목록	결합시 추가되는 효과	가능성
Entity List	+ 재무부 해외 기술투자 금지 목록 IRA 세액공제 재무부 SDN 재무부 증권투자 금지 목록(CMIC) 국무부 Debarred List 국방부 CMC 목록	등재자 연관시 해외투자 금지 등재자 연관시 보조금 자급불가 대금 결제 등 금융거래 차단 등재자에 대한 증권투자 금지 무기 및 방산서비스 제공 금지 국방부 조달 금지	시행 중 시행 중 하(일부 시행) 상 최상 최상



## 2. 2025년 무역안보 주요 전망

### ④ 경제 블록화의 심화와 수출통제 충돌

- 미국은 파트너국들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 진영이 분리되어 물품과 기술의 이전이 자유롭지 않음 (블록화)
  - (특정국을 타깃팅) 미국은 최근까지도 對중국 HBM 및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발표함 ('24.12.).
  - (역외적용) 미국은 FDPR 도입을 통해 수출통제 역외적용을 확대 / 한편, 중국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 제정 ('24.10.)을 통해 역외적용 근거 마련.
  - (수출통제 법령의 충돌) 미국, 중국 양국의 역외적용 대상이 되는 제3국 기업의 경우 양국의 역외적용이 충돌하여 양국 법령 중 하나만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미국과 중국의  
역외적용 메커니즘  
비교**

구분	미국	중국
대상품목	미국이 원산지인 품목	중국이 원산지인 특정 이중용도품목
편입품목	외국산 제품이 미국산 품목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구체적 비율 제시)	중국이 원산지인 특정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 통합 또는 혼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이중용도 품목 (구체적 비율 제시하지 않음)
자국산 통제품목·기술 활용 생산품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여 미국 밖에서 생산되는 제품 (FDPR)  * 적용대상 기술과 목적지를 특정하여 제시	중국에서 유래한 특정 기술과 같은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이중용도 품목  * 적용대상 기술과 목적지를 제시하지 않음



### 3. 결론

- 1.20, 미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및 상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수출통제 체계를 검토하여 전략적 경쟁자 및 대리자로의 전략물자(Strategic Goods) 이전을 차단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시
  - \* 아울러 재무부 장관에게 Outbound 투자규제 관련 기존 행정명령과 재무부 최종규정이 안보위협 해결에 충분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
- ①美 기술우위 유지/강화 방안, ②전략적 경쟁자로 전략물자가 유출되는 제도적 허점 보완, ③외국의 준수 동참을 유도할 집행 메커니즘 발굴(무역 및 안보 조치 포함)을 주문
- 수출통제의 목적이 기존의 전통적인 “WMD 확산 및 군용 전용 방지”를 넘어 “기술 우위 확보”에 있음을 명시한 바,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 및 우려국의 기술토착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출통제가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적 수출통제 기조를 일부 수용하되,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고,
  - 중국, 러시아 등으로의 우회수출에 대한 차단 등 집행을 강화하며 동맹국의 적극적 이행을 강제할 것으로 전망



### 3. 결론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적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며 특히 첨단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수출통제와 투자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 미국은 실효적인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벌금의 수위를 높이고 집행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단 산업 분야에서 우방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심사가 적용될 것이며 민감기술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도 확대될 것.
  - 중국은 무역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낼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수출통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실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감사합니다.

2025년 무역안보 Outlook 보고서는 아래 URL을 찾아주세요!

<https://edu.kosti.or.kr/system/bbs/report/list.do>

삼일PwC Global Trade Solution Center 세미나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정책 수단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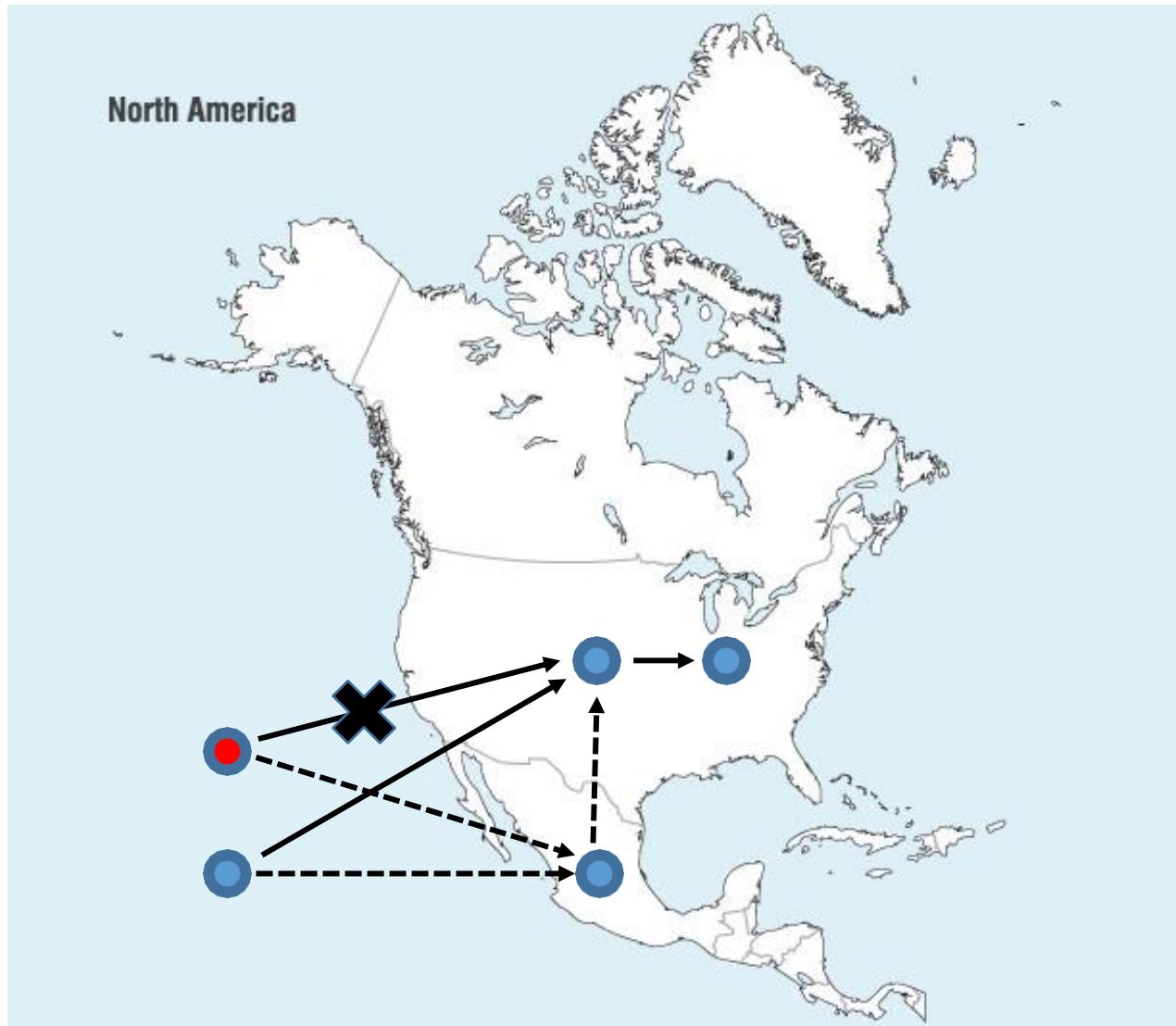
예상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연구위원

2025년 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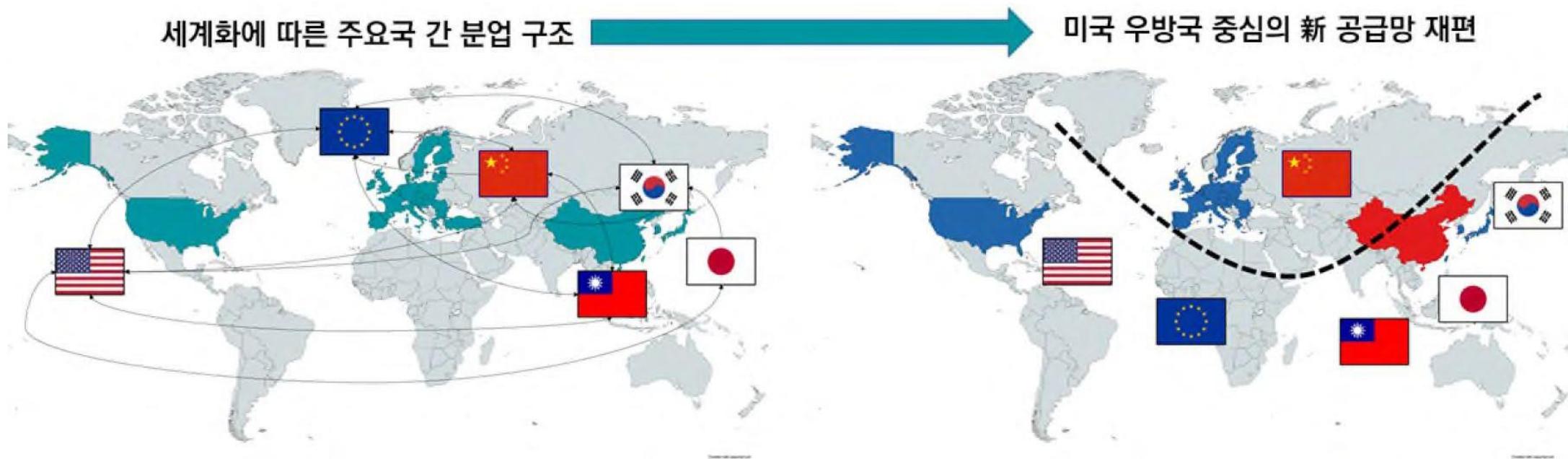
# 공급망 재편 정책의 수단



- 관세
- 투자인센티브
- 원산지 규정
- 수출통제
- 공급망 협정
- 경제안보 정책
- ...

# 공급망 재편 정책의 수단

##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30p.

# 1기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관련 정책

---

-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
  -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정책
- 미·중 무역전쟁
  - 대중국 수입품 관세부과 -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 등 전략적 목표 존재
- 국내투자 및 제조업 활성화
  - TCJA(Tax Cuts and Jobs Act, 2017)를 통해 국내투자 확대, 자본 리쇼어링 유도
- 안보 목적의 대중국견제
  -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거래 제한
  - CFIUS 권한 및 역할 강화 (외국인투자심사제도)

#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기조 차이

---

- 관세정책 적용 범위의 확대
  - 불공정 무역 관행과 무역 불균형 해소에 집중 → 불법 이민, 마약 문제, 외교 문제와 같은 비경제적 영역으로 관세부과의 명분 확대
-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
  - USTR, 상무부, 무역위원회 등 통상업무 유관 부처에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으로 1기에 비해 더욱 확대된 범부처적 접근
- 중국과의 무역관계 접근
  -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율 관세 부과 → 국가 안보와 연계된 접근 방식 강화, 보다 포괄적인 대중관계에 대한 재검토
-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중요성 증가와 통상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 명령을 통해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 등 추진

# 공급망 재편 정책 수단의 변화 예상

---

- 관세 - 더욱 광범위한 문제 해결에 활용, 산업정책 측면의 투자인센티브를 대체
- 투자인센티브 - TCJA의 연장 측면에서 고려
- 원산지 규정 - 중국의 대미간접수출 적극적으로 차단
- 수출통제 - 현행 기조 유지 및 확대
- 공급망 협정 - 일방주의적 접근
- 경제안보 정책 - 현행 기조 유지 및 확대

#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제약

- 행정부 주요 인사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이름	배경	관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헤지펀드 매니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전 수석 투자 책임자	관세를 협상 도구로 인식,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점진적 접근 지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 미국 산업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월스트리트 경영자;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공정한 무역 관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사용을 지지하며, 이를 협상 카드로 간주,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관세보다는 특정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적용을 강조
피터 나바로 (무역 및 제조 담당 수석 고문)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경제학자; 보호무역주의 관점과 중국 비판으로 알려짐	예외 없는 최대한의 관세 적용을 주장,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관세 정책의 목표로 인식,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포함한 공격적인 조치를 지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통상전문 변호사; 전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	불공정 무역 관행 - 특히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 무역 협상에서 사용되는 레버리지로서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만, 비교적 온건한 시각을 견지

#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제약

---

- 인플레이션 압력
  - 높은 물가 수준은 2024 미 대선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재집권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
  -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
-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
  - TCJA 지출 법안을 위해 공화당 내 재정보수주의 진영을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

# 결론 및 시사점

---

- 2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북미 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지속
  - 미중 간 리스크는 기업 의사결정에 선반영
  - 북미 역내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국 의존도 축소 필요
- 보편관세 부과시 이를 양자 관계 이슈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 할 가능성
  - 광범위한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위협적이나, 동시에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협상력을 제한하는 한계
  - 선제적 제안은 지양할 필요

# 결론 및 시사점

---

- 상호관세의 경우 각국의 정책 대응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
  - 환율, 비관세장벽,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관점 차이로 합의점 마련에 난항
  - 제3국 수출전환과 내수 확대 노력
-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보조금 축소 전망
  - TCJA 개정 및 연장에 따른 대규모 지출 증가 예상과 재정확보를 위한 관세 정책의 한계
  - 기술 경쟁력 유지와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브라운 필드 투자 확대

감사합니다

Session 2.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

# 통상규제 전반과 생산지 최적화 전략

삼일PwC 소주현 파트너





# Agenda

- 1 통상규제 전반**
- 2 생산지 최적화 전략**
- 3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4 Key takeaways**

# 1

## 통상규제 전반



# 트럼프 정부 통상규제 개요

취임 1달 시점 23개의 행정명령 등으로 미국은 10년간 약 2조\$의 세수효과, 한국 주요 기업의 '24년 연간 영업이익보다 높은 관세 부담

## 2조 \$

보편관세 10%, '25년~'34년 미국 세수  
(Tax Foundation, 6 Nov 24)

- **20%부과시 3.3조\$**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수요 둔화  
→ 2배에 해당하는 4조\$에 미치지 못함

## 93개

연방 관보 및 백악관 기준 행정명령  
('25년 2월 20일 기준)

- **Total: 93개**

행정명령(65), 포고문(12), 각서(16)

- **관세 및 통상 관련 23개**

행정명령(19), 포고문(2), 각서(2)

## 45조원

'24년 대미 수출금액에  
25% 관세 부과 시<sup>1)</sup>

- '23년 삼성전자 미국 수출 규모 35.3조원 (본사기준, 사업보고서 주석사항 SEA 매출액)

25% 관세 부과 시 약 5.9조원 > DX 부문  
영업이익 5.2조원<sup>2)</sup>

- '23년 현대차 미국 수출 규모 16.5조원 (본사기준, 사업보고서 주석사항 HMA 매출액)

25% 관세 부과 시 4.1조원 > 본사 영업이익  
2.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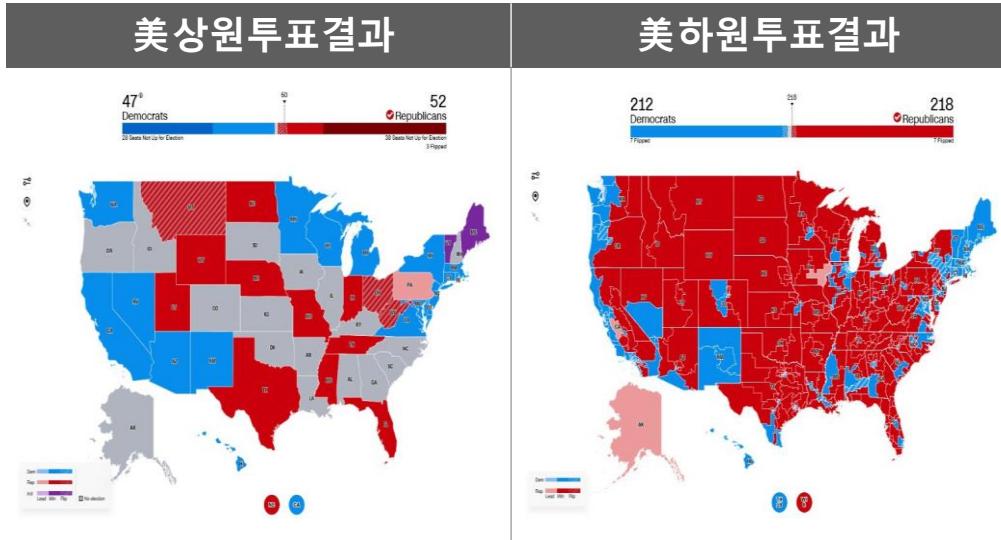
1) '24년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약 179조 원), 출처 무역협회

2) 반도체 업황에 따라 DS 부문 '23년 16.7조 원 적자 제외'

# 트럼프 정부 통상규제 개요, 계속

탄탄한 공화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1기 대비 더 강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하여 관세 전쟁 중

## ▶ 트럼프 2기 행정부 개시



주: 2024년 11월 19일(화) 15:31(한국시간) 기준 / 자료: CNN, 2024 E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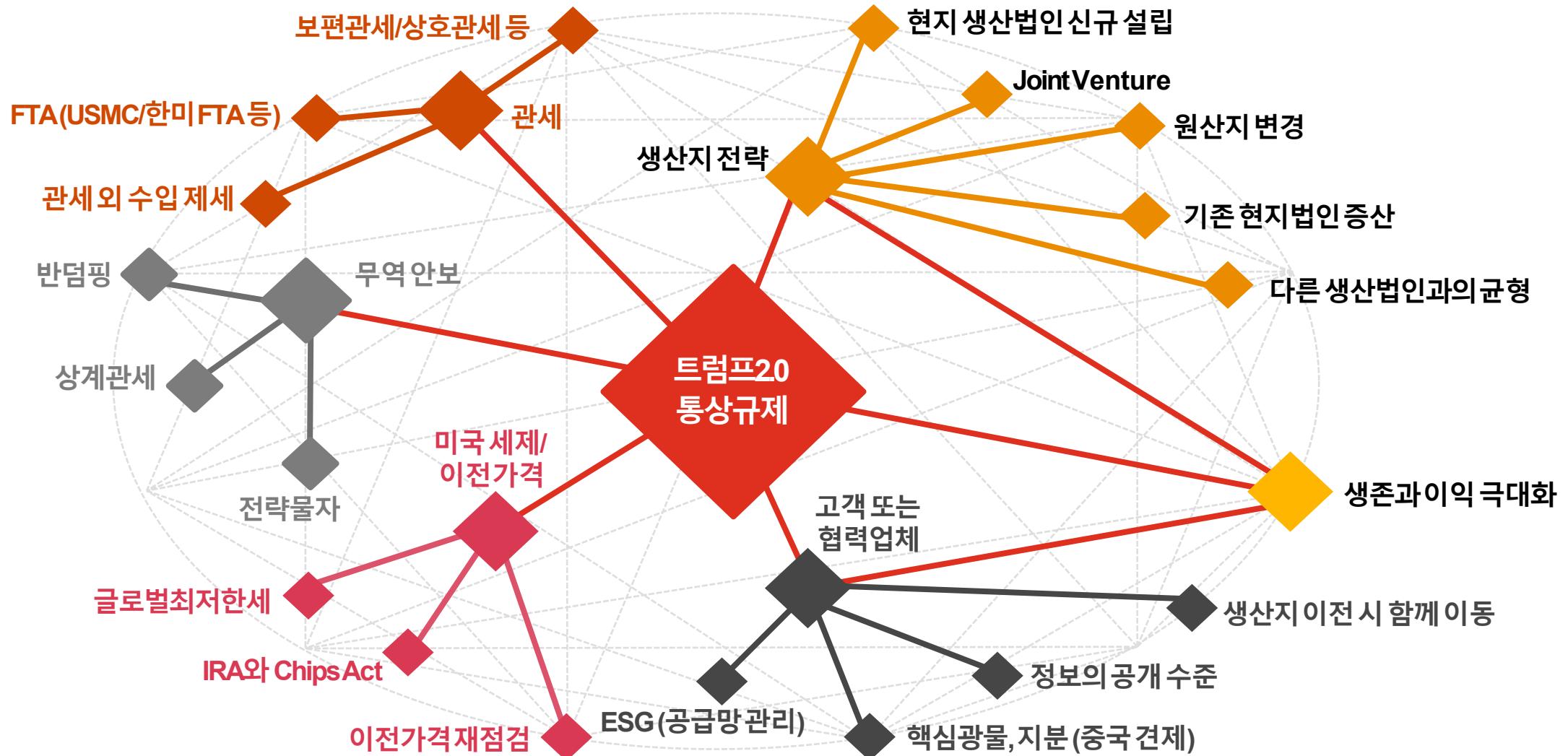
연도	날짜	일정
2024	12.11.	주별 선거인단 명부 확정
	12.17.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 투표
2025	1.3.	119대 의회 개원
	1.6.	상/하원 합동회의,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결과 발표
	1.20.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 ▶ 트럼프 2기 주요 정책 KEY

관세	공급망
<p><b>‘보호무역 확대’</b> (단기적 영향)</p> <p><u>“중국산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 실현 가능</u></p> <p><u>“보편 관세” 및 “상호주의 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도 분석 필요</u></p>	<p><b>‘미국 내 공급망 강화’</b> (Up-Stream)</p> <p><u>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배치” 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안정성 제고</u></p> <p><u>(Down-Stream)</u></p> <p><u>“중국산 제품(전자제품, 철강 등) 수입” 단계적 축소,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입” 제한</u></p>
수출통제	무역 협정
<p><b>‘수출통제 강화’</b> (수출통제의 강화)</p> <p><u>“바이든 행정부의 Sector 기반 수출통제” 유지</u></p> <p><u>(독자적 수출통제의 부활)</u></p> <p><u>“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Entity List” 확대 운영</u></p>	<p><b>‘무역 협정 전면 재검토’</b> (다자간 무역 협정)</p> <p><u>다자간 무역 협정 탈퇴 및 재조정 시사</u></p> <p><u>(양자간 무역 협정)</u></p> <p><u>양자간 FTA 협정 재협상 의지 표명</u></p>

# 통상규제와 기업 고려사항 개요

쏟아지는 뉴스, 시시각각 변경되는 산발적인 정책 발표, 위협과 기회 사이 어딘가에서 생존과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



# Voice from Clients (기업들의 구체적인 고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정해져 있는 답에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렇지 못한 현실과 Risk 들

## Idea



가격을 인하해볼까...

이익 회수 방법이 없을까..  
(주기적 이익 조정, 로열티, 경영관리수수료....)

당장에 생산라인을 늘릴 수도 없고...

Joint Venture는 어떨까?

생산지 이전?  
일부 라인 변경 통한 원산지 변경?

트럼프 이후엔??

미국만 신경쓰면 되나?

## 부딪치는 현실과 Risk

관세 과세가격 인하에 따른 관세 조사(심하면 반덤핑 조사도...),  
현지법인이익 증가 → 한국 국세청 Challenge

한국 송금에 대한 미국 국세청 Challenge

막대한 비용(돈도 없고....)

지분율 협상 힘겨루기, 우려거래자 가능성..

단독 의사 결정 어려움(나만 옳긴다고 되나..)  
우회수출로 조사

그 전에 생존이 먼저...

유럽, 중국, 인도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특히 유럽의 규제 중심의 견제는 미국 못지 않게 신경 쓸 필요



2

## 생산지 최적화 전략



# Global 생산지전략의 변화 Trend\_최근25년

경제 블록화 확산 시점에 출범한 트럼프 2기에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권역별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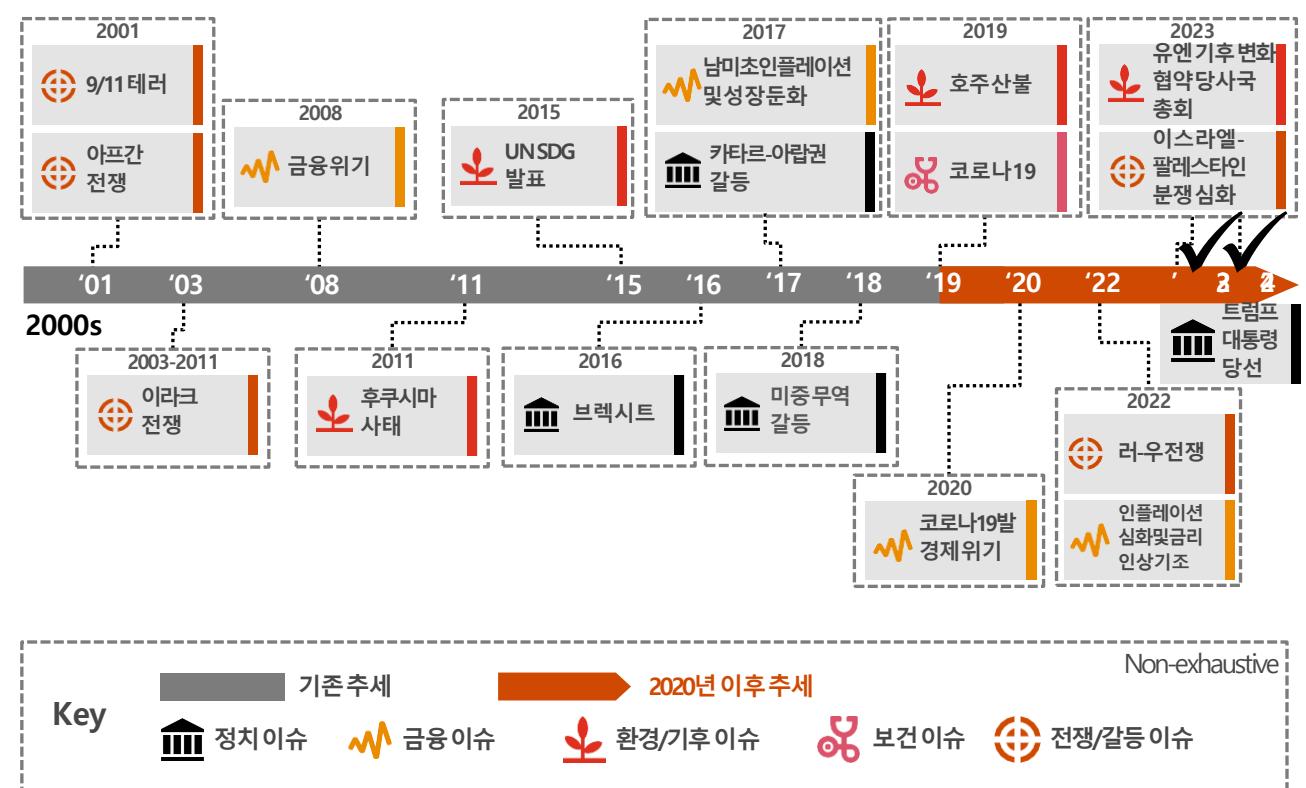
과거 저렴한 임금과 원가를 바탕으로 생산지 전략을 구가하였으나,  
제조비용 상승 및 전쟁, 공급업체 협상력 강화 등으로 블록화 진행



출처:PwC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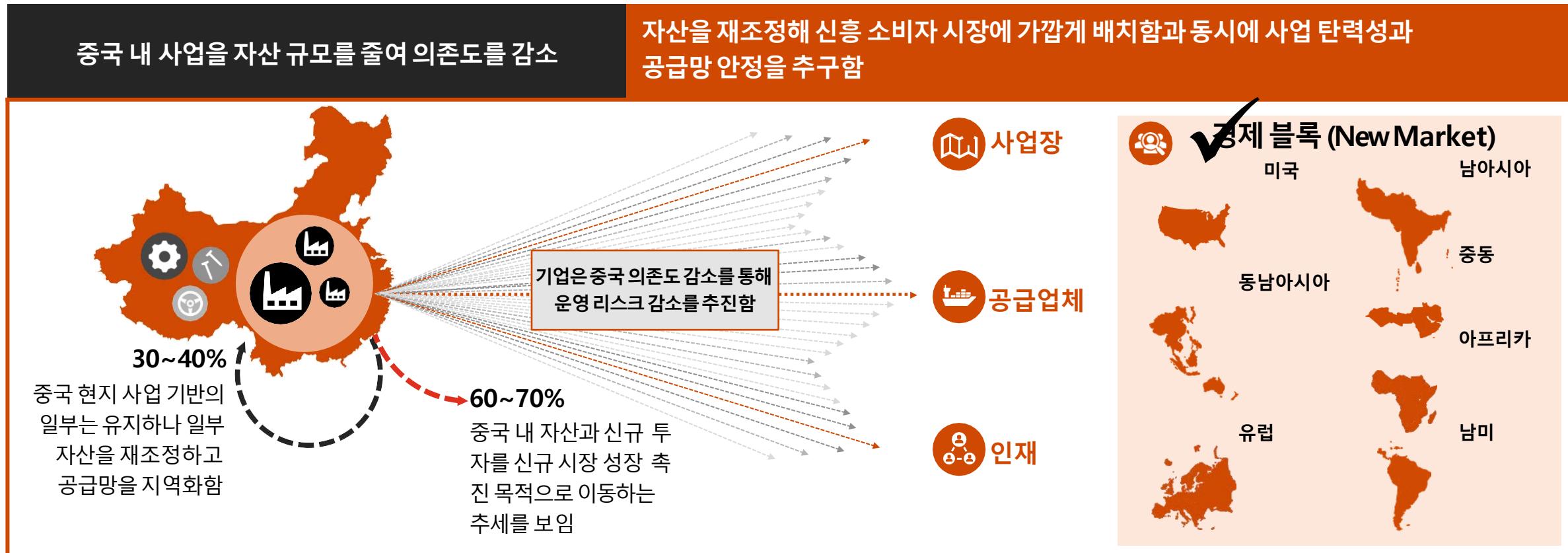
Samil PwC

Covid-19 기점으로 제조업의 중요성 부각,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앞다투어 진행,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전세계 생산지 전략이 빠르게 재편되는 추세



# Global 생산지전략의 변화 Trend\_ 탈중국가속화

중국 제조 비용 상승,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진 對 중국 견제로 Global 수출기지로 운영되던 중국의 생산법인들의 역할과 공급망 → Global 및 아시아 시장은 베트남/태국/인니, 미국시장은 미국/멕시코, 유럽시장은 폴란드/체코 등으로 빠르게 재편



# 트럼프2기 생산지 전략

블록화 추세의 생산지 전략에서 “관세=비용”이 Key가 됨에 따라 관세 효과에 대한 치밀하고 상세한 분석과 시나리오 필요  
“관세”는 가장 오래된 TAX이며,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회귀 필요 – 관세 Simulator Tool(비용/Compliance/Risk 관리)

## ▶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검토 항목

As-is 공급망 (단기)	재고자산 비축	공급업체 협상 - 비용 고정	원산지/ 자유 무역 협정	대체 가격 책정	관세 환급 (가능한 경우)	관세 분류/제외 또는 면제, 자유 무역 지대(FTZ)	First Sale <sup>1)</sup>

기존 공급망

수정 공급망

To-be 공 급망 ( 중장기)					
공급업체/고객 가격 책정 및 협상	무역 정책 컨설팅 및 고객 메시지	생산지 재검토 (Site Selection)	제품 흐름/대체 재료	공급망 발자국– 변경 또는 다양화	

# 3

## 한국 기업의 대응



# 한국기업들의 대응 현황

트럼프 1기 당시의 경험으로 관세 폭탄을 우려해 당선 직후부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

머니투데이, 2월 24일자 보도

## 美의약품 관세 예고에... K-제약/바이오 "현지 생산 검토"

셀트리온, 상반기 미국 내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확보 위한 투자 결정 계획  
SK바이오팜, 미국 위탁생산 시설 확보

### 제약·바이오사 대응 현황

셀트리온

- ▶ 관세 부담 낮은 원료의약품 수출 확대
- ▶ 미국 현지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확보

SK바이오팜

- ▶ 캐나다 외 미국 내 생산전략 추진 중,
- ▶ 미국 위탁생산(CMO) 시설 확보
- ▶ CMO업체 외 추가 생산 수단 확보 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 ▶ 관세 정책 지켜보며 대응책 검토

GC녹십자

- ▶ 면역그로불린 '알리글로'는 필수의약품이라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 ▶ 관세 가능성 낮을 것으로 예상

\*자료: 각 사

MJT 머니투데이

제약·바이오사 대응 현황/그래픽=김지영

시사저널, 2월 3일자 보도

## 트럼프 관세 폭탄 현실화... 삼성/LG, 대응 '총력전'

멕시코 일부 생산물량 미국 이전 추진  
복수 생산체제 확대해 고관세 리스크 최소화



매일경제, 2월 16일자 보도

## 4월 관세폭탄 터지기 전에... 현대차, 美공장 조기 가동 '풀액셀'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 쇼크  
한국 작년 366억달러 美수출  
미국차 수입은 21억달러 그쳐  
"韓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암첨, 환경·안전기준에 불만  
美, 비관세장벽 문제 심을듯  
정부, 통상차관보 위성탄 급파  
폐기지 딜 협상 카드도 검토



# 한국기업들의 대응 전략개요

전통적인 법규정에 대한 최첨단 Digital Tool의 활용 단기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다양하고 복합적인 Compliance/Risk 요소 고려 필요



“

You can't improve what you don't measure.

Peter Drucker

1

## 기존 공급망 Global Pricing Simulation

- As-Is Value Chain 분석  
→ 관세 영향 분석  
(보편/보복/상호...종류별)
- 사외유출 최소화 Pricing  
Simulation (모델별/원재  
료별/생산지별)
- 적용 시기(재무제표 반영),  
TAX, 제반 Compliance  
Risk 종합 검토 시나리오  
→ Digital Tool 활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2

## 거래구조 or 생산라인 변경

- 거래구조 변경  
(중계무역 전환 Or First Sale)
- 생산 라인 변경 (FTA 등 활용)  
(일부 생산 라인을 FTA 체결  
국 또는 현지로 이동)  
  
※ 우회수출 주의  
- 보복관세 301조 원산지규정  
  
→ 핵심광물, 우회수출,  
이전가격, 세제혜택 등

3

## 신규 법인 설립 or J/V or M&A

- 설립 유형 별 장단점 검토
  - 설립 목적, 초기 투자비용,  
세제 혜택 등
- 신규 법인 Or M&A
  - 세제 혜택, 적정 이익율,  
협력업체 등 제반 환경,  
인력 Pool 등
- Joint Venture
  - 지분율, 기술(무형자산),  
사업성 분석 등
- 사업성(경제성) 분석,  
Transfer Pricing Policy 등

#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_관세 절감 Idea

## ▶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검토 항목



재고자산  
비축



공급업체 협상  
-비용 고정



원산지/자유 무역  
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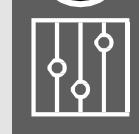
대체  
가격 책정



First Sale



관세 환급  
(가능한 경우)



관세 분류/제외  
또는 면제,  
자유 무역 지대(FTZ)

1

### 원산지/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활용(원재료 및 생산라인 일부를 한국/미국 이동)
- 미얀마 등 GSP 활용
- HS/부가가치 계산 중요

※ 유의사항:  
우회수출

2

### 대체가격 책정

- 미국 판매가격, 각국
- 관세율 부과 고려
- 생산지별 수출가격조정
- (모델별, 수입가격)

※ 유의사항:  
반덤핑, CBP(관세청)조사,  
현지이익

3

### First Sale

- 요건: 생산지 판매,
- 독립거래(Arm's Length)
- 미국으로 수출 목적

※ Key:  
특수관계자 Arm's Length 증명  
(제3자 상대적으로 용이)

### 기타 방법

- 관세환급
- FTZ(자유무역지대)
- 품목분류 재분류/제외/
- 면제규정 활용(예: 소액)

# 4

## Key Takeaways



# Key Takeaways

## 공급망 재설정 Playbook

### 단기적 (Digital Tool을 활용한 신속한 시나리오 작성)

#### 1. 단기 영향 대응



##### 종합적인 글로벌 리스크와 위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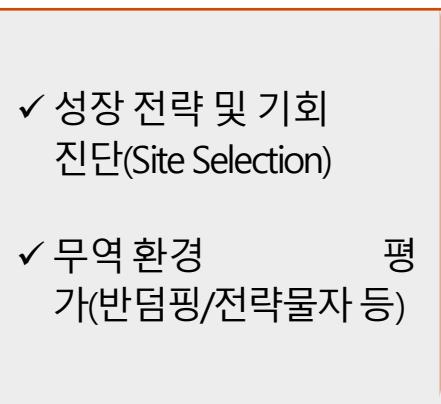
✓ 트럼프 2.0 관세영향 Simulator 및 Pricing 시나리오

✓ 시나리오 기반 위험 및 절감 방안 도출

#### 2. 보호무역 확산 대응



##### 경쟁, 공급망 환경, ESG 영향 등 검토



✓ 성장 전략 및 기회 진단(Site Selection)

✓ 무역 환경 평가(반덤핑/전략물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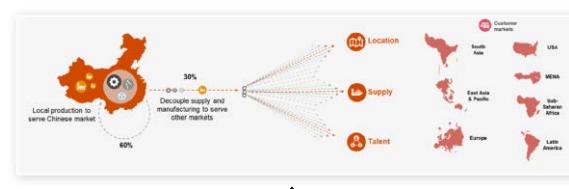
### 중장기(보호무역 확산 및 규제 확산 대응 초점)

#### 3. 운영 모델 재설정



##### 글로벌 네트워크 재편 생산

지변경 또는 이전, 신규설립, JV, M&A 등을 통한 글로벌 생산지 다각화



##### 차별화된 실행력을 통한 승리 차별화된 글로벌 전략 실행을 통한 공급망 재설정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 ✓ TOM(타겟 운영 모델) 개발
- ✓ 해외 입지 선정 및 재설정
- ✓ 공급망 진단
- ✓ 인재 전략 / 진단
- ✓ EU 및 주요 국가 환경 및 무역 규제 분석
- ✓ 정부 지원 / 인센티브 확보
- ✓ 공급망 디지털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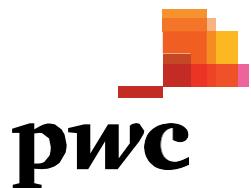
- ✓ 애널리틱스 Tool 및 재무적 솔루션 개발
- ✓ 인재 확보 및 유치 지원
- ✓ 파트너사 협력 강화
- ✓ 관세 부담 완화(절감 방안)
- ✓ EU 환경 및 주요 국가 무역 규제 준수 지원
- ✓ 수출 역량 강화

# Thank you

**Session 2.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

# 미국 세제 변화 및 향후 전망

삼일PwC 박광진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 트럼프 2기 주요 조세정책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방 정부 부채 부담의 심화 우려 상존



## 감세 vs 재정적자

- 美 재정책임위원회(CRFB)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연방부채를 \$7.75조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연방부채 증가 예상 항목 중, “**트럼프감세법**”(TCJA) 연장 및 수정에 따른 효과가 **\$5.35조**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트럼프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은 대부분 관세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는 입장이나, **총 세수 감소분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

### 연방재정적자의 심화 우려 속 트럼프 2기 정부의 감세 방식과 수준이쟁점



➤ 감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TCJA 주요 조항의 연장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  
(※ 지난 트럼프 1기 TCJA와 바이든 정부의 IRA도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법안 통과)

➤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할 바이든 정부의 IRA 및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및 세액공제는 대상 및 규모 축소 가능성 존재

# 법인세 정책 전망

자국 내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완화 조치 및 TCJA 연장이 예상됨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미국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관세 증가 및 세액공제 감소 영향 등을 동시 고려 필요

## 1 트럼프감세법(“TCJA”) 연장

25년말부터 일몰 예정인 TCJA의 연장 추진

연구개발(R&D)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현행) '22년부터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경비로 처리하는 대신 5년간 상각  
→ 연구개발(R&D)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설비투자보너스 감가상각

(현행) 설비 등 취득자산의 100% 감가상각 허용이 '23부터 단계적(20%) 일몰  
→ 설비 등 취득에 대해 100%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특례 영구화

## 2 법인세율 인하

일반: 21% → 20%(1% 인하)  
제조기업: 21% → 15%(6% 인하)

## 3 법인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 폐지

트럼프1기 폐지되었다가 바이든 정부 때 대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IRA를 통해 재도입 → 다시 폐지 예정

# 국제조세 정책 전망

GILTI, FDII, BEAT 등 국제조세 세제 개편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자국 세법을 기반으로 디지털세 필라2 대응 및 추가 협의 예상

## ▶ GILTI, FDII, BEAT

- 미국 무형자산의 해외 이전 방지 및 무형자산을 통한 미국 내 소득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로 트럼프 1기 TCJA 일부로 도입
- 25년 말 TCJA 일몰 시, 26년부터 유효세율 상승이 예정되어 있으나, 트럼프 2기 정부는 인상폭을 당초 예정 대비 줄이거나 기존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경 예상

## ▶ 국내 기업의 영향

- 국내 본사 주도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 한국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 지주회사를 통한 북미/중남미 투자구조를 가진 국내 글로벌 기업의 경우 미국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구조 및 해외 사업구조의 세무 효율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유효세율 비교

구분	현행	예정(26년)	공약	비고
GILTI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	10.5%	13.125%	12.5%	현행 대비 <b>인상</b>
FDII (해외 무형자산소득)	13.125%	16.406%	13.125%	현행 세율 <b>유지</b>
BEAT (세원잠식 남용방지 세제)	10%	12.5%	12.5%	현행 대비 <b>인상</b>

# 디지털세(필라1)

OECD 디지털세 합의 사항의 미국 내 도입은 더 요원해진 것으로 평가

## ▶ 필라 1 – Digital Tax Amount A, B

- OECD 차원의 디지털세 합의가 미국의 조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발표
- 필라 1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나 필라 1의 미국 내 도입은 더 요원해진 것으로 보임
- 지난 10년간 14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될 우려 및 국가간 조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
- 디지털서비스세(DST) 시행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단행 가능성

구분	개요	비고
Amount A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을 시장 관할 구역에 재분배</li><li>• 글로벌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다국적 기업에 적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소득이 시장 소재국가인 해외에서 과세되어 미국 세수의 손실이 발생</li></ul>
Amount 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국적 기업의 일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수익률 규정</li><li>• 통상적인 해외 판매법인에 적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납세자 및 과세행정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소화된 방식의 이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li></ul>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영향

美 진출 국내기업은 변화된 통상환경을 고려한 이전가격 검토 및 그룹 내 거래구조 개편 고려 필요

## ▶ 이전가격 영향

- 美 보편관세는 미국법인 이익률을 감소시켜 미국에서의 이전가격 리스크가 증가 가능
- 이전가격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업상/세무상 중대한 불이익과 비효율 초래

1	이증과세 발생(동일소득에 대해 양측 과세당국에서 중복 납부)
2	가산세 중과(가산세 및 2차처분 효과로 유효세율 증가)
3	분쟁 해소의 어려움(세수확보에 대한 과세당국 간 이해충돌)
4	각국의 강화된 이전가격 의무(BEPS 등 문서화 의무 강화)

## ▶ 기업의 대응 방향

- 미국 진출 국내 기업은 미국 통상환경 등 변화된 상황에 맞는 이전가격 사전검토와 Study를 통해 과세 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
- 美 통상환경의 변화는 다국적기업의 생산·판매·서비스 법인의 거래구조를 개편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룹 내 거래구조 개편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거래구조 개선에 따른 법인 별 수행기능, 부담위험의 전략적 재편성과 선택 가능한 효율적 이전가격 구조를 통해 그룹 관점에서 글로벌 유효세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세(필라2)

필라2 미도입, 미국 독자적인 국제조세 과세체계 유지 및 확장 예상 미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도입국에 대한 보복조치 모니터링 필요

## ▶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 미국은 현재 **필라2** 미도입국으로 GILTI 등 자국 세법에 따라 **독자적인 규정을 집행 중에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의회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 입장 고려 시, **미국의 필라2 비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국내 기업의 영향

- IIR을 적용 받는 국내 최종모회사 입장에서 미국의 필라2 미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 25년부터 UTPR 시행 예정이며,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 발표 후 60일 내로 미국기업에 대한 역외과세 및 차별적 조치를 조사하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보호) 조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향후 추이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비고
IIR (소득산입규칙)		저율과세 국가 소재 자회사에 대한 추가세액을 <b>최종모기업에 과세</b>	미국은 필라2를 도입하지 않고 자국 세법상 GILTI로 필라2 대체
UTPR (소득산입보완규칙)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 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가세액을 <b>UTPR 규정 도입국가 소재 자회사에 과세</b>	<b>미국 소득을 해외 국가가 과세</b> → <b>트럼프 정부는 이를 미국기업에 차별적인 역외과세로 판단하여 보복 조치 시사</b>
QDMTT (적격소재국 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b>저율과세 국가 소재 자회사에 과세</b>	해외 국가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로 미국 반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존 에너지 및 환경 정책 폐기에 따라 IRA 수혜 대상 축소 예상  
적용 대상 및 품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규정 발표 예의주시 필요

## ▶ 그린뉴딜 폐기

- 트럼프는 '25.1.20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철폐'
-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나는 '그린뉴딜' 관련 지원을 중단
- 트럼프는 IRA를 강하게 비난하며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대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IRA 관련 불확실성이 가중

## ▶ 향후 전망

- 산업계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IRA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IRA를 완전 폐기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정부는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혜택 수혜 요건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해석하여 수혜 대상을 축소하거나, 특정 대상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 할 가능성 있음
-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된 전기차 지원 정책 폐지,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 강조,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향후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 제조 시설 관련 지원 세액공제 대상과 수준이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

구분	주요 적용 요건	예상 쟁점
친환경 차세액공제 (Sec.30D)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내 배터리 최종 제조 공장 보유</li><li>• 우려집단의 부품 및 광물 사용금지</li></ul>	▶ 행정명령을 통한 전기차 지원 정책 폐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Sec.45X)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 생산 판매</li></ul>	▶ 신재생에너지 등 트럼프 정부 정책과 일치되지 않는 품목의 제외 가능성
청정 제조 시설 투자 세액공제 (Sec.48C)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정 에너지 관련 기술 제품 제조 시설 투자</li><li>• 탄소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시설 투자</li></ul>	▶ 그린뉴딜 정책 폐지 등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 투자의 조정 가능성

#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트럼프 정부는 지원 혜택을 축소하거나 더 강화된 가드레일 조항 등으로 더 많은 분담금 납부 요구 가능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으로 선회하는 경우,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가능

## ▶ 반도체 지원의 필요성

-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첨단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
- 그러나, IRA와 마찬가지로 러트 닉 상무장관 인준 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재협상을 모색, 향후 있을 일부 보조금 지출에 대한 연기를 시사**

## ▶ 향후 전망

-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기업과 합의한 사항은 **구체적 조건 등 협상 내용을 평가한 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추진 할 수 있음**
  - ▶ 주요 적용 요건 변경 또는 강화를 통해 향후 보조금 규모 축소 가능
  - ▶ 非미국 국가 지원 조항이 수정될 경우, 미국 진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사업 재조정(중국 관련 사업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여 해외 반도체 업체들은 지원 혜택이 축소되거나 더 강화된 가드레일 조항으로 더 많은 분담금 납부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구분	첨단 제조 투자 세액 공제 (AMIC, “48DCredit”)
개요	미국 반도체 생산 관련 시설 투자 시, 투자 금액의 25%를 세액 공제 또는 세액 환급(Direct Pay) 혜택 제공
적용 요건 및 예상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적격 투자:</b> 반도체 제조 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는 적정 생산 시설(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 정부는 특정 시설 구축 및 기술이전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li><li>▶ 또한, 미국 반도체 업체와 공동 투자, 위탁 생산 등의 조건도 요구할 가능성</li></ul></li><li>■ <b>적격 투자자:</b> “비 적격 외국 법인”이 아니며 이들과 “중요한 거래”를 하지 않은 투자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적격 외국 법인에 대한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 기업의 수혜를 제한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 위주의 지원으로 조정될 가능성</li></ul></li></ul>

#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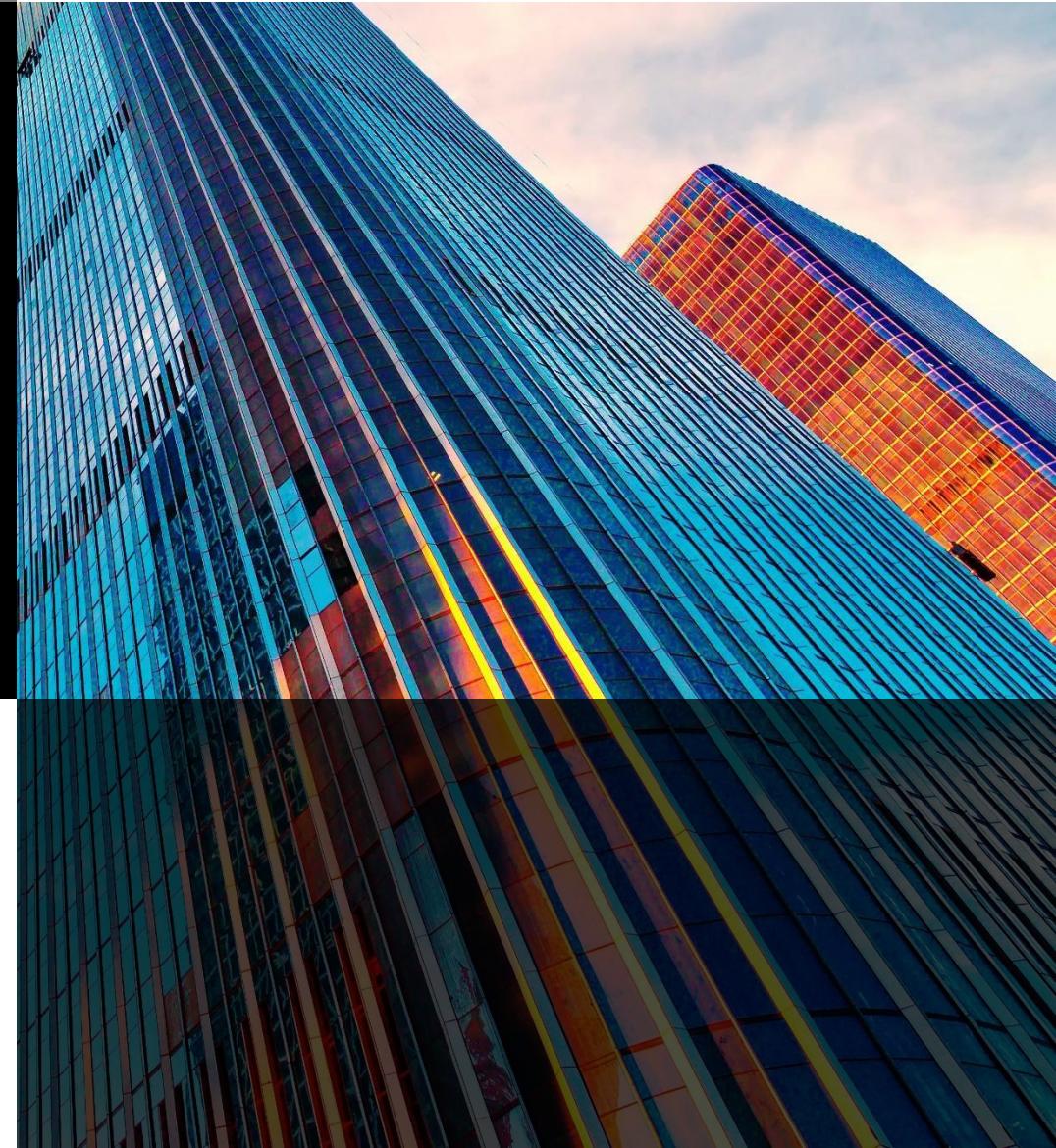
**Session 2.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

# 통상이슈 대응을 위한 공급망 추적성 관리체계

PwC컨설팅 **최준걸** 파트너



삼일회계법인





# Agenda

- 1 공급망 규제 Trend**
- 2 규제 사례 및 추적성(Traceability) 관리**
- 3 주요 고려사항**

# 1

## 공급망 규제 Trend



# 공급망추적 및 관리 규제 History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목적과 함께 각 국가/지역의 자국 이익 강화 및 특정 국가/지역에의 제제를 위한 통상 목적의 공급망 추적/관리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 공급망 추적 및 실사 관련 국제 기준 및 규제

### UN 인권이사회(UNGPI)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채택
-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책임 강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인권' 챕터 추가)
- 분쟁지역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지침 발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OECD 실사 지침 발표
- 공급망 내 부정적 영향 방지·완화

2010

2011

2015

2017

2018

2021

2022

2023

2024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기업의 자발적 참여

공급망 관련 의무 법제화 및 위반시 제제 강화

### 미국 캘리포니아주

- 공급망 투명성 법률 제정

### FTA 확대

- FTA 세율 적용 위한 원산지 증명

### 영국

- 현대노예법(공급망 내 투명성 법률) 제정

### 프랑스

- 실사의무법 제정

### 미국 UFLPA<sup>1)</sup>

- 신장 위구르 지역 강제노동 결부 제품/부품의 수입금지  
(21.12. 법안제정/22.06 시행)

### 미국 IRA<sup>3)</sup>

-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미국 또는 FTA 지역 생산/공급망 대상 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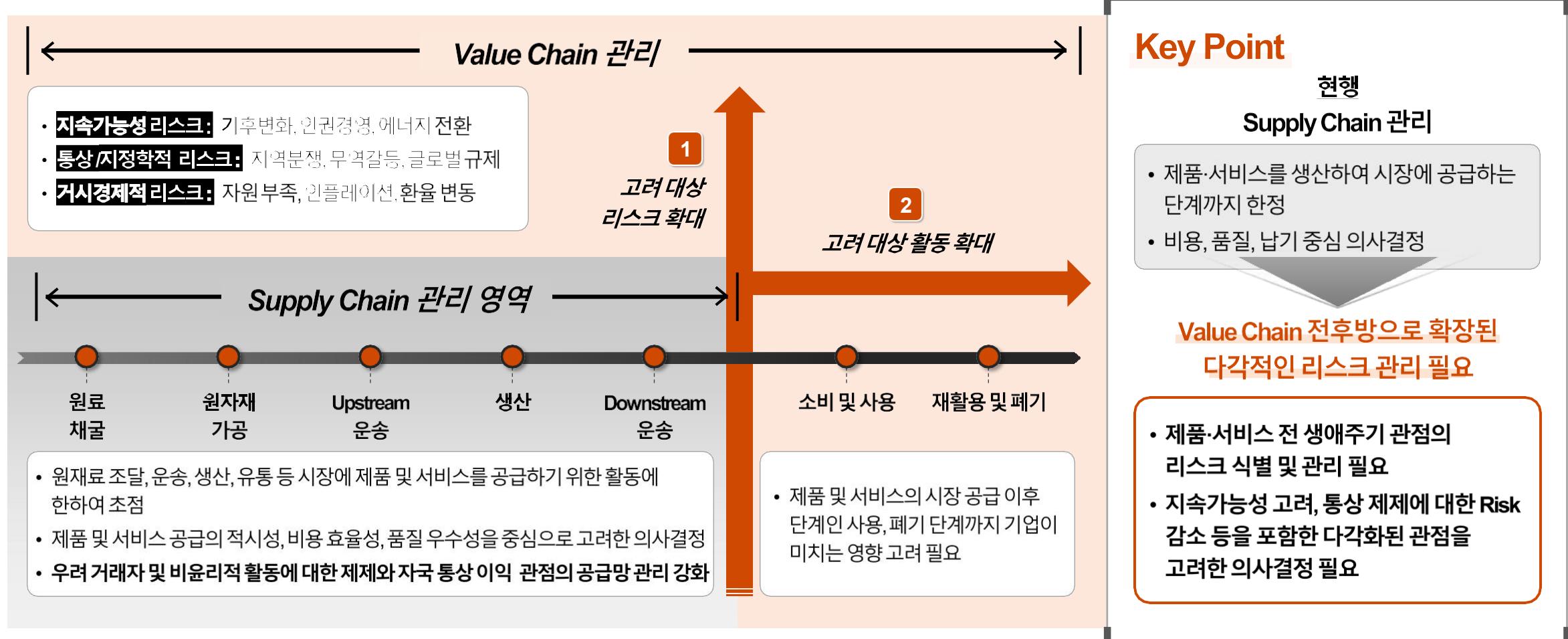
### EU

- 탄소국경조정세(CBAM) 시행

1)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2) Critical Raw Materials Act (핵심광물), 3) Inflation Reduction Act, 4) EU Deforestation Regulation

# 공급망 관리 범위의 확대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및 각종 통상 이슈/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의 관리범위 확대 필요



Source: 삼일 PwC(2024) 공급망 혁신 2030

# 2

## 규제 사례 및 추적성(Traceability) 관리



# 공급망 규제와 Traceability

다양한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전체 Value-chain 대상 Traceability 확보 필요

	원료공급	소재가공	부품제조	완제품 생산	
EU CSDDD <sup>1)</sup>	모든 Value-chain에서 환경 및 인권·노동 관련 위험 식별, 개선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사/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EU 강제노동금지법	EU 내 통관 제품 대상, 모든 Value-chain 내 강제노동 결부 금지				
미국 UFLPA <sup>2)</sup>	신장 위구르의 강제노동 연관 여부에 따라, 모든 Value-chain 대상 미국 강제노동 단속국의 지정단체 금지				
EU CRMA <sup>3)</sup>	핵심광물 사용 원산지 비율 규제	EU 역내 가공 비율	핵심광물 부품 사용비율	공급망 안정 위한 참여, 위험평가 의무	“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1차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Value-chain의 Traceability 확보 필요”
미국 IRA <sup>4)</sup>	광산의 위치 광물 종류	소재 가공 국가의 위치 사용 광물 종류	배터리 부품의 제조/조립 지역	배터리 제조 핵심광물의 미국/FTA 체결국 비중	
EUDR <sup>5)</sup>	제품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지리적 위치, 산림전용 무관 입증 문서, 원산지 증명서			EU 제품 수출 시, 실사 인증서	
분쟁광물	광산의 위치 금속 종류	제련소의 인증서 획득	사용광물 정보	규제 광물이 포함된 최종 제품	

1)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3) Critical Raw Materials Act (핵심광물), 4) Inflation Reduction Act, 5) EU Deforestation Regulation

# UFLPA 위반사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규제인 UFLPA 위반이 발견되어, 통관 보류 등의 제재조치

## 1 규제 위반 의심 부품 발견

- '24년 1월, 공급망(3차)에 UFLPA 제재 업체가 포함된 사실 인지
- A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에 자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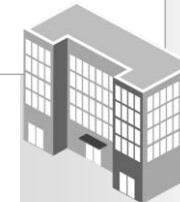
## 2 강제 수입보류 및 문제 부품 전수교체

- 수천대의 A사 제품의 수입을 보류하고 세관 항구에 차량 14,000여대를 유치



## 3 사업활동 및 공급망 재검토

- A사는 미국 수출 차량에 포함된 중국 서부 지역 생산 부품의 교체를 위해 차량 인도의 연기를 결정



## 4 기업 평판 및 투자자 손실

- '24년 9월, IPAC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A사의 신장 지역 내 인권 감사를 'Leaked Audit'이라 비판
- MSCI ESG는 A사에 Red Flag 등급 부여
-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A사 제외



1)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북미, EU 등 자유진영 국가들 중심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제적 협의체

# UFLPA 준수 및 실사 입증을 위한 필요 절차

최근 발주사/고객으로부터 RFP 및 계약 협의 시 UFLPA준수 확인에 대한 실사/증명 요구 증가  
→ 사후적인 입증/실사 준비도 필요하나 사전적인 정보 관리 및 검증 프로세스 중요

## 규제 주요 내용/Requirement

 <b>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sup>1)</sup>) 규정에 따라 미국 수입 물품의 생산과정 내 전 공급망 추적</li><li>위구르 지역과 연계되고 FLETF<sup>2)</sup>가 마련한 법인 명단에 있는 기업의 물품은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li><li>추정을 반박하고 수입이 허용되기 위한 조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입업자가<ol style="list-style-type: none"><li>FLETF의 지침을 준수하고, CBP의 질의에 충분하게 응답</li><li>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및 제조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USCBP장이 인정하는 경우</li></ol></li></ul></li><li><b>처벌 조항:</b> UFLPA 추정이 적용되는 물품은 압류되며, 이 물품의 수입이 민/형사상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li><li>FLETF 지침 및 CBP 규정에 따라 <b>강제노동 생산품 대상 여부 파악 및 입증 필요 (고객인 수입업자 의무 지원)</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품의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공급망 추적 관련 문서 제출 필요</li></ul></li></ul>

## UFLPA 집행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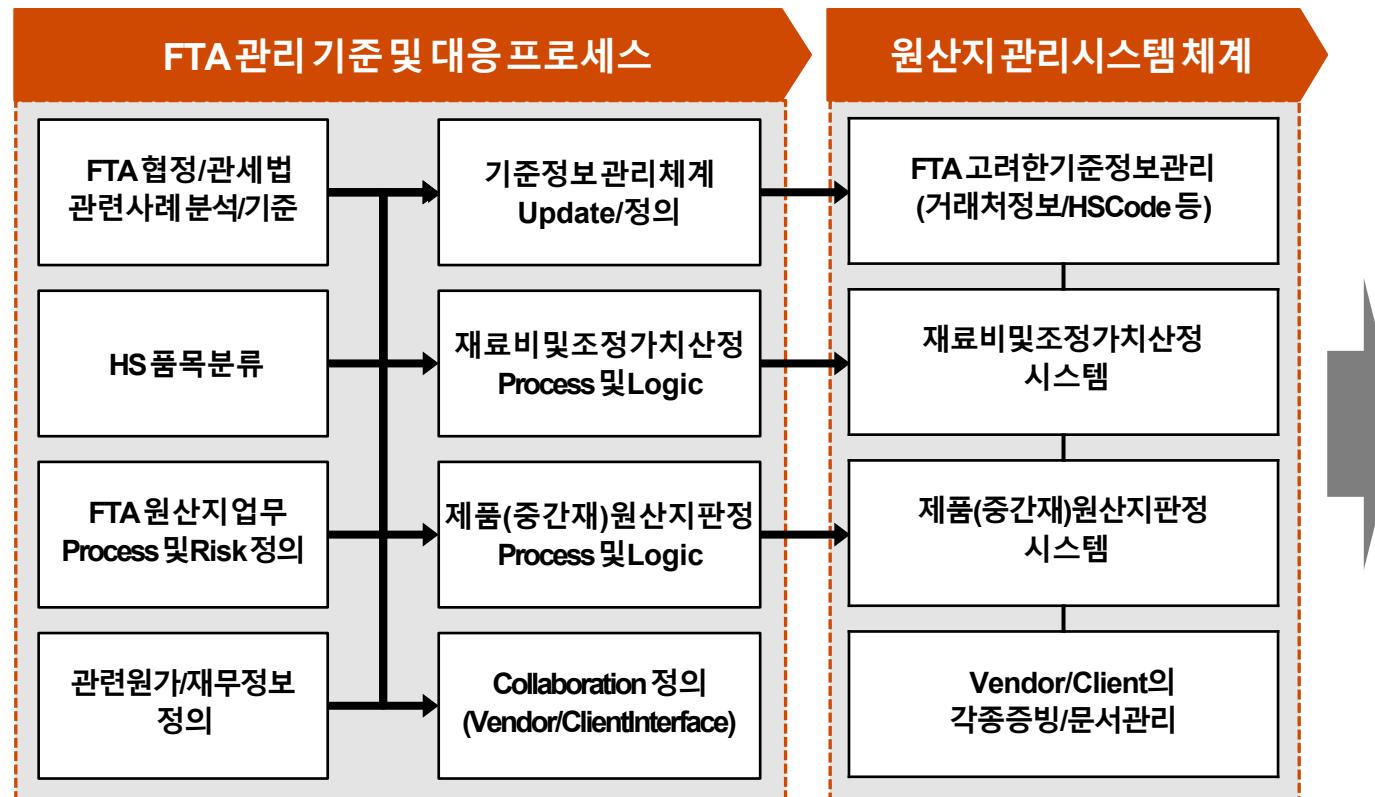
정보의 종류	예시
<b>공급망 추적 정보</b> (제품/상품이 신장 지역에서 채굴, 생산, 제조에 기반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품의 공급망을 추적하는 문서</li><li>공급망 전반에 관한 증빙 (채굴, 생산, 제조 모든 단계를 포함한 공급망의 상세 Flow)</li><li>상품 또는 구성 요소에 대한 증거 (채굴 기록, 구매요청서, 원산지 증명서, 인보이스, 재료 구성표(BOM) 등)</li><li>채굴자, 제조업자 등에 관한 증거 등</li></ul>
<b>문서화된 공급망 관리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채굴, 생산, 제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시정하도록 설계된 내부통제 문서</li></ul>
<b>중국산 상품이 강제노동에 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상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공급망 지도</li><li>중국산 상품 생산과 관련된 업체별 1인당 임금 및 생산성</li><li>근로자 채용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정보</li><li>신뢰성 있는 강제노동 관련 감사내용 등</li></ul>

1)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

# FTA/USMCA 관련 Update 상황 반영

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FTA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Update 검토 필요

## 기존 FTA 대응 체계/시스템 구성



1)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2)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3) Labor Value Content

## 예상되는 변경/Update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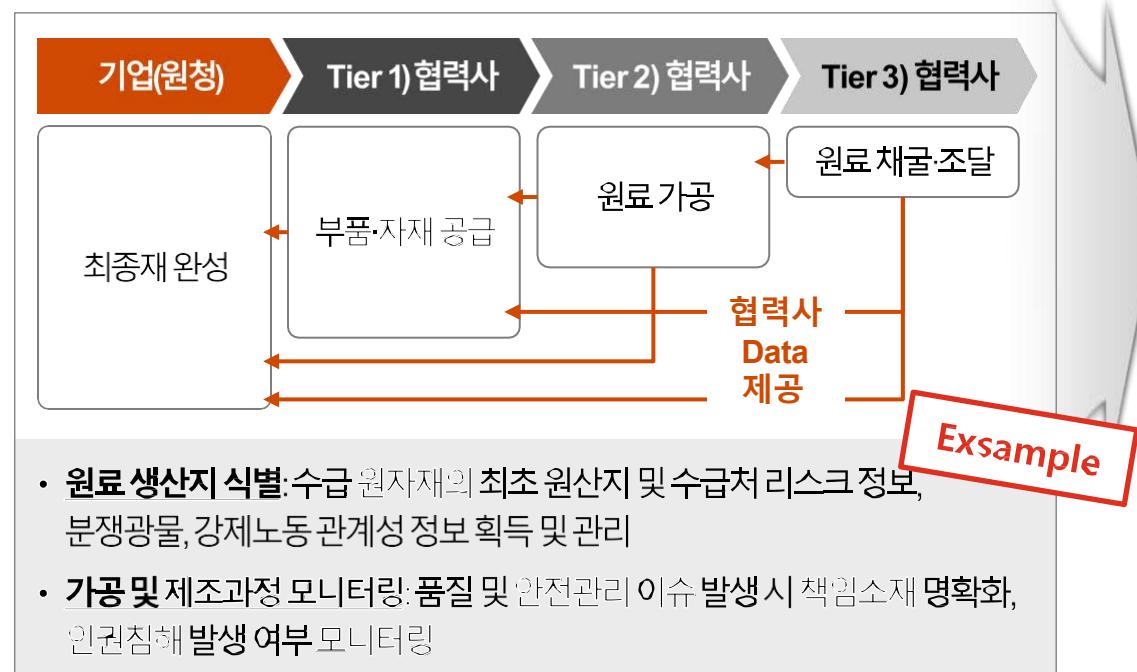
- 고임금 노동 가치 비중(LVC) 규정 신설 및 강화 예상:** 기존 NAFTA<sup>1)</sup>에는 없던 내용으로서, USMCA<sup>2)</sup>에는 부가 가치 기준 설정 시 시급 USD 16 이상 고임금 노동자를 활용하도록 하는 LVC<sup>3)</sup>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향후 LVC 비율 규정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업 원산지 기준 강화로 중국산 포함 역외 산차단:** 현재 USMCA는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역내 산부품 비율을 NAFTA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농업/철강 등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미국산 원재료 요구 건을 추가할 가능성 존재
- USMCA 재협상 주기 조정과 무역 규제 강화 예상:** USMCA는 6년 주기로 협정 규정 재협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은 이를 조정하기를 (더 빨리 재협상하기) 원하고 있음. 조정 항목에는 원산지 규정과 더불어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및 노동, 국가 안보 등 내용을 포함하여 자국 우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시스템 관리 체계 반영 여부 검토 필요  
(Ex. LVC 관련 기준 정보/Data 및 산출 체계, 환경 및 노동 추적 등)

# 공급망 Traceability 체계의 필요성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및 각종 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의 추적 및 관리 범위 확대

## ▶ 공급망 Traceability의 개념

- 원료 조달, 가공, 부품 생산, 최종재 완성, 소비, 폐기, 재사용/재활용에 이르기까지 Value Chain 전반에 걸쳐 제품 또는 원자재가 이동하는 모든 흐름을 추적하고 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 ▶ 공급망 Traceability 확보 필요성

▶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및 통상 규제 리스크 관리 요구 증대

### 글로벌 공급망 관련 규제 강화

환경, 인권 보호 및 통상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정보 제공 또는 실사 요구

- (공급망 전반)EU CSDDD
- (환경/통상)EU CBAM, US IRA
- (인권/통상)US UFLPA, EU 강제노동금지 규정
- (원자재/통상)EU 배터리법, 분쟁광물 규제, EUDR

###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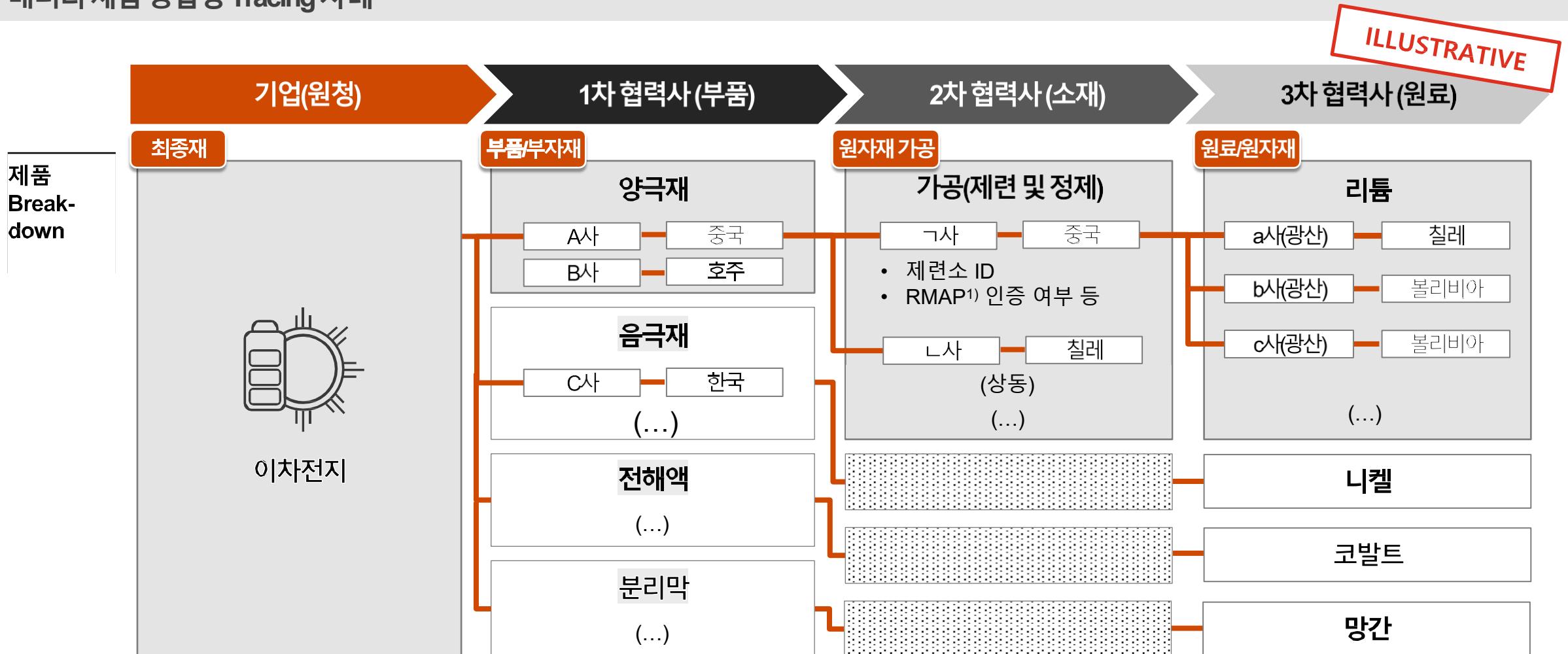
▶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 운영

- Apple**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운영
- Nike** 공급망 ESG 평가 체계 수립 및 운영
- Volkswagen** 책임 있는 공급망 시스템 (ReSC) 운영
- Nestle** 공급망 내 아동 노동 근절 Action Plan 수립

▶ 회사의 공급망 단계별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통상 리스크 대응 및 관리 必

# 공급망 Traceability 관리 Output Image

## 배터리 제품 공급망 Tracing 사례



1)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주관의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 3

## 주요 고려사항



# 공급망추적 체계 구축 Approach

규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회사의 공급망 전략 수립 후,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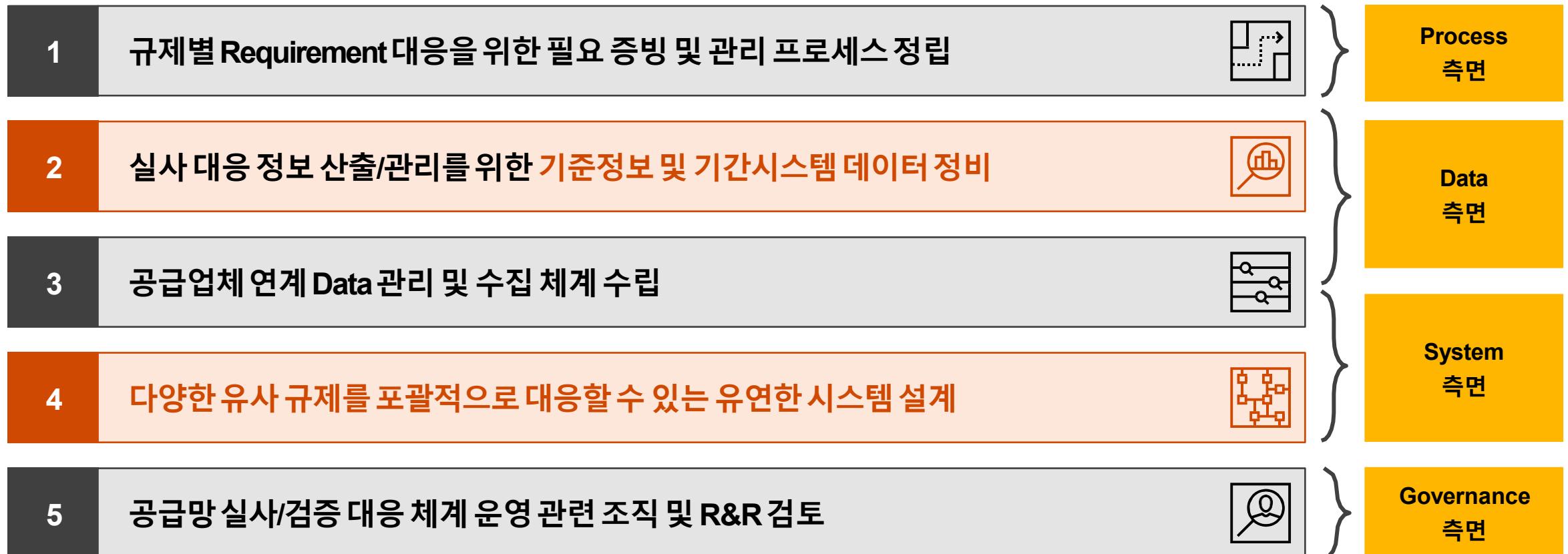


진단 및 전략 수립, To-Be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각 공급망 규제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정의</li><li>규제와 관련된 회사 경영진의 공급망 전략 파악</li><li>생산지/공급망 전략 기반의 공급망 추적 To-Be 설계</li></ul>	“시행착오 및 Regulation Risk 최소화”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분석된 공급망 관련 규정/제도와 회사의 시스템 Infra를 고려한 관리 솔루션 구현</li><li>향후 유사 규제 대응을 위한 Flexibility 고려</li></ul>	“회사 현황에 맞는 유연한 시스템 구현으로 추가비용 최소화”
공급망 실사 대응 운영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구축된 공급망 추적 대응 체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및 조직 체계 구성</li></ul>	“공급망 추적 관리 업무 효율성 및 이행 실효성 확보”

# 공급망추적 체계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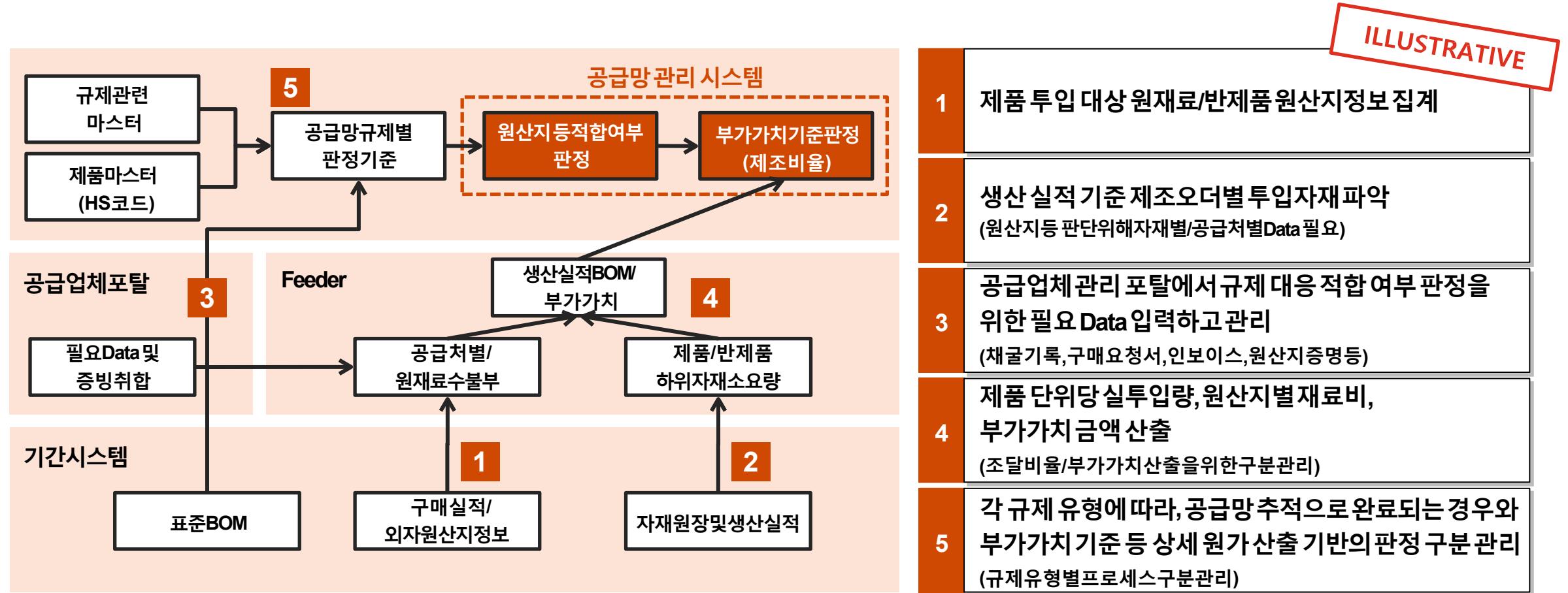
프로세스, Data, System 및 Governance 측면을 모두 고려 필요

## 성공적인 공급망 추적/규제 대응을 위한 과제



# [참고] 공급망 Traceability 시스템 Architecture

기간시스템에서 구매 및 기초 원가정보 등을 추출하여 Feeder 영역에서 실적 BOM 및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망 규제 적합여부 판단



# Thank you